

## <별첨2>

### 박근혜대통령 집권 4년, 대선공약 이행평가 세부내용

#### 1. 경제민주화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1)-1.중소기업적합업종체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사업제 도입에 관련한 상생협력법 통과</li> <li>현재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적합업종 지정 (2011년 82개)</li> </ul>
	(1)-2.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약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협약체 신설 의무화</li> <li>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 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할 때 등록건수를 제한하거나 있다 상업을 명시.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닐 경우 우선 상생 방안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태.</li> </ul>
	(1)-3.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개정.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명시</li> <li>가맹점주 단체의 설립근거나 교섭기간, 교섭내용에 대한 효력에 명시되지 않아 효성 논란 여전</li> </ul>
	(1)-4.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해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법에 반영되어 통과됨</li> </ul>
	(1)-5.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기본법 국회 계류중.</li> <li>표시광고 분야 동의의결제 도입 명시한 표시광고법 통과</li> </ul>
(2)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 체계 개선	(2)-1.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원장 등 3개 기관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요청시에 제한적으로 공정위 고발 의무화. 실효성 논란 여전</li> </ul>
	(2)-2.공정거래법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 대금의 부당</li> </ul>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p>단가인하, 부당발취소, 부당반품등에 대해 3배이상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하도급에서 확대 도입하도급공검운용경과에 따라 도입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국회 계류중</li> </ul>
	(2)-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계류 중</li> </ul>
(3) 대기업집단의사위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입법사항(검찰의 구형 및 항소기준을 상향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항소)</li> </ul>
	(3)-2.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입법사항(사면심사위원회 엄격한 사를 거쳐 서면으로 상신)</li> <li>• 49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이 지난 8월 사면복권</li> </ul>
	(3)-3.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인 사가 연간 200억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 협소한 기준을 뚫으로써 5조원 이하 기업 집단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지속적으로 발생</li> <li>• 지분매각, 합병, 분할을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사례 빈번. 실효성 논란 여전</li> <li>•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편법적인 상속 및 이익을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감을 받은 법인 과 일감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세할 수 없는 등 제도 취약점도 있어 보완 필요. (감사원, 자본·금융거래 과세 실태</li> </ul>

					사 결과)
(4)기업 지배 구조 개선	(4)-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 공정거래법 통과
	(4)-2.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상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4)-3.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 국민연금법 계류(의결권 강화를 위한 비입법사항 조치 완료 후 시행중)
	(4)-4.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 상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5)금산분리 강화	(5)-1.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계류
	(5)-2.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완료
	(5)-3.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완료(은행, 은행지주, 상호저축->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도입) •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 출자자로 한정. 배임, 횡령 등 일부 비리에 대한 심사 빠져 실효성 논란 여전
합계(18)		6	5	7	

### (1) 이행률(미이행 39%→완전이행 33%→후퇴이행 28%)

- 경제민주화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18개중 6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이 33%에 불과.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로 28%. 미이행 공약은 7개로 39%에 달함.
- 공약영역별 세부공약 이행률이 낮은 영역은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으로 완전이행 된 것이 한개도 없음. 반면 세부공약 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3개, ‘금산분리 강화’ 2개가 완전이행됨.
-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산분리 강화 영역에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는 공약이 미이행에서 완전이행으로 바뀜.

### (2) 평가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완전이행 33%로 전년대와 비교해 1개가 완전이행이 추가되어 5% 정도 증가한 것 밖에 없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정

부는 국정과제 기준에 따라 법 개정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100점 만점 중 80점(국정과제 기준으로 65% 이행)을 주장하며, 자화자찬 하지만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봤을 때는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음.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임.

- 지난해 롯데그룹 사태, 삼성그룹 합병 논란 등 재벌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이나 기업지배 구조개선의 공약 이행 성적이 여전히 매우 저조함. 여기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례를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 됨.
- 올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임을 고려하면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된 제도와 정책의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실효성 논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지난해와 비교해 후퇴된 경우도 있음.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 영역의 공약이행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공약이행이 법과 제도 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2. 힘찬 경제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1)-1.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 1조 5천억원 규모로 공약보다 축소
	(1)-2.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	○			• 국민행복기금 기본 시행 사항 • 출범 이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하여 '15.2월말까지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1)-3.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			• 국민행복기금 기본 시행 사항
(2) 서민의 과대채무 해소	(2)-1.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 국민행복기금 기본 시행 사항 • '13.4~'15.2월 말까지 총 6.1만명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6,930억원) 지원자(6.1만명)의 평균 이자부담 1,174만원을 918만원으로 경감
	(2)-2.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			• 13. 4. 22. 확대적용 (신용회복위원회)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2)-3.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이나 추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li> <li>•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8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것도, 하지만 행정지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음</li> </ul>
(3)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3)-1.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 중단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li> <li>• 제2조4의2 조항 근거</li> <li>• 14.10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 약 2.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li> </ul>
	(3)-2.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 경감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li> <li>• 제49조의8 조항 근거</li> <li>•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li> </ul>
	(3)-3.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이 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li> <li>• 제2조3의2 조항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조1의2 근거</li> </ul>
(4)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정확성 제고	(4)-1.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7. 30.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경로 마련'</li> </ul>
(5)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5)-1.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li> <li>•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등위(금감원 위탁)에 등록.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하도록 업무 이관</li> <li>• 제 3조의 5에 등록요건 명시(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는 제외)</li> </ul>
	(5)-2.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0

					<p>의 자기자본 조건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움</li> </ul>	
	(5)-3. 대부업 자율규제 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 구축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명시</li> <l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7에 대부중개업 협회에 업무 위탁 조항 명시</li> <li>• 2015년 12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발표. 기존에 TV 등 영상광고만 엄격히 심사하고 있던 대부업 비영상 광고도 심사하도록 자율규제 기능 확대 강화.</li> <li>•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 강화</li> </ul>	
(6)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령 및 관행 개선	(6)-1.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li> <li>• 대형대부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 기능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li> <li>• 최고 금리 한도 적용도 대상에 미등록 업체도 포함</li> <li>• 대부업 광고 방송 시간도 및 광고 내용 규제도</li> <li>•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한도 규제 법률 국회 계류 중</li> </ul>	
	(6)-2.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는 15년 12.10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li> <li>• '적합성 보고서 도입'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li> </ul>	
	(6)-3.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공시체계 구축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li> <li>• 금감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금융실 신설(2016.02.02. 조직개편)</li> </ul>
	(6)-4.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에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개선 실시</li> <li>• '취기 관행 근절', '연대보증 제도개선', '대출청</li> </ul>

					<p>약권 철회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 시행('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 모습' 금융위 보도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문제 등 여전히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음</li> </ul>
(7)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7)-1. 정부의 R&D 지원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높이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R&amp;D 국가 예산 18조 9230억원 중 중소기업 R&amp;D 지원규모는 2조 9596억원(15.6%)(감사원 보도자료)본래 15년은 16.8%, 19년은 18% 확대 계획. (2015~2019 국가 운용계획)</li> </ul>
	(7)-2.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R&D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6월 미래부,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 세부 실행계획 발표. 6월 발표한 실행계획에 정부 R&amp;D 상용화 연구 비중 축소 계획 포함</li> <li>•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302→ 379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22→ 433억원(2016년도 예산안 개요)</li> <li>• 정부 R&amp;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 확대(%) : ('13) 34.1 → ('17) 40 (2015~2019년 국가운용계획)</li> <li>• 6월 발표한 실행계획에 출연연 중소기업 쿼터제 예산 확대 방안 포함 ('15년)13.8%(1,313억원) →('16년)14.7%(1,441억원)</li> </ul>
	(7)-3. 국가예산을 지원 받은 R&D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이전하도록 법제화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미래부, 13.9.26 개정) 제 2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조항에서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li> </ul>
	(7)-4.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2015. 12월 30일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li> <li>• 반복 및 장기지원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li> </ul>

					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운용되어 왔음
(8) 중소기업 의 인력 확보 지원	(8)-1.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회') 구축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3.12.26 국회 통과</li> <li>2014.1.21. 3장 제8조3 개정.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명시</li> </ul>
	(8)-2.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협약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확대(중기청 협업)</li> <li>14년 17개 사업단(특성화고 35교, 전문대 17교) → 15년 20개 사업단 → 17년 23개 사업단 계획=&gt; 15년 신규사업단 선정하지 않음</li> </ul>
	(8)-3.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3.12.26 국회 통과</li> <li>14년 100개 기업 지정, 15년 150개 기업 지정</li> <li>중기청, 인재양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육성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의 정책자금을 신설하고 각종 정부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방침. 17년까지 1,000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발굴 계획</li> </ul>
	(8)-4.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 가중 부과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분담금 시행되지 않고 있음.</li> </ul>
(9)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9)-1.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동안 단순 수출액으로만 기업을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를 통해서 수출초보, 수출유망, 글로벌강소 기업으로 구분(2015년 도입)</li> <li>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li> <li>수출역량강화를 위해 무역실무기초,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li> </ul>
	(9)-2.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청, 수출기업 육성 및 미래유망기술에 대</li> </ul>



	기업과 내수에서 수출 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한 중점 투자 (기술혁신 R&D, 2,620억원) (중기청 2016예산안)
	(9)-3.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89개 수출진흥사업소를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지방청 12곳에 설치 -&gt; 13곳으로 증가</li> </ul>
	(9)-4.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 예산을 현행 중소기업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년 예산 1.9%, 14년 예산 1.9%(13.9.30 14년도 중기청 예산안 분석)</li> <li>15년 예산 2.2%(15년 중기청 예산안 분석)</li> <li>2016년 중기청 전체 예산 8조원에서 수출 판로 분야 예산 1.7억원으로 5% 수준 되지 않음.</li> </ul>
(10)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10)-1.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과산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li> </ul>
	(10)-2. 국제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 실적과 연계하여 국제감면 혜택 부여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납처분 유예, 감면 제도 마련(13. 07.0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li> <li>국제마일리지 제도 도입 안 됨.</li> </ul>
(11) 공공 분야의 공공 입찰 및 수요처 구현	(11)-1.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도 도입 유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여 14년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15년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평가 TF 운영</li> </ul>
	(11)-2.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으로 설정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토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li> <li>「판로지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총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규정</li> <li>구매 비율 공기업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음</li> </ul>
	(11)-3.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li> <li>14년 시범사업 중이며 200억 이상의 국가공사는 분리발주를 의무</li> </ul>

	발주 법제화				화하는 국가계약법 법률개정안 준비 중
(1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체계 구축	(12)-1.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기능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4년 1월 1일 설치됨.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은 15년부터 연간 2조원 운영 예정-&gt; 2015년 예산 1조 4970, 2016년 예산 1조 5550원</li> </ul>
	(12)-2.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	0			
	(12)-3.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 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병행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마케팅, 컨설팅 사업 진행</li> </ul>
(13)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현대화	(13)-1.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들가게 수는 2012년 말 9704개에서 2013년 9111개, 2014년 9062개로 감소. 2015 6월말 기준 8663개를 기록.</li> <li>• 2012년 330억 원이던 전국 나들가게 사업예산은 2013년 34억 원, 2014년에는 56억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li> </ul>
	(13)-2.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청,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 예산 1000억 원.</li> <li>•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li> </ul>
	(13)-3.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룸몰)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7월, 포털시스템 마련 (전통시장통통, www.sijangtong.or.kr)</li> </ul>
	(13)-4.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 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등 사업 진행</li> </ul>
(14)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	(14)-1.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통합물류단지, 중소기업공동구매·배송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 지원 인력 확대. 2016 예산 17억 7천만 원</li> <li>• 중소기업 공동구매 관련해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시범 사업 시행 예정. 2016년 예산 15억</li> <li>•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관련해 연구 용역 타당성 조사 진행 예정</li> </ul>

	(14)-2. 영세 소매업체 전담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지원실, 관련 계획 없음</li> </ul>
	(14)-3.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전폭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청, 2016년 소상공인활성화 자금 249억원 배정. 전년 대비 9억원 늘어난 금액</li> <li>• 지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 협업 지원은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li> </ul>
(15)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	(15)-1.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활동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5000억원, 14년 6360억원, 15년 7400억원, 16년 8600억원, 17년 1조원 등 총 4조 원 발행예정</li> <li>• 중소기업청의 &lt;은누리 상품권 연간 판매계획 및 판매실적 현황&gt;에 따르면, 13년 5,000억원, 14년 3,600억원, 15년 4,000억원, 16년 4,500억원, 17년 5,000억 원으로 수립. 대선공약 절반에 불과</li> </ul>
	(15)-2. 전통시장 '은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추진			○	
(16)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16)-1.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시간에도 통행료 25% 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1년 연장 포함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li> <li>• 주간할인 적용 안 됨</li> </ul>
	(16)-2.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2.18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13.12.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정기점검을 삭제하고 정기검사로 통합 시행</li> </ul>
(17) 택시업 대책	(17)-1.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최근 지자체의 택시 감축을 10년-&gt;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li> <li>• 예산부족 등으로 10년 안에 5만 대 줄이기 어렵다는 진단</li> </ul>
	(17)-2. 경유 또는 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 연료의 다변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여객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안 통과. 지난 9월부터 경유택시에 리터당 345.54원 유가보조금 지원</li> </ul>

	(17)-3.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		•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적용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계(51)		24	21	6	

**(1) 이행률(완전이행 47%→후퇴이행 41%→미이행 12%)**

- 힘찬경제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51개중 24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47%.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21개로 41%. 미이행 공약은 6개로 12%에 달함.
- 공약영역별 세부공약 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으로 3개의 세부공약이 완전이행됨.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과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등에서 세부공약의 완전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이행률은 보임.

**(2) 평가**

- 지난해 완전이행 41%에서 금년 힘찬경제의 공약이행이 47%로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낮음. 국민행복기금 등 일부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률은 높지만 범위와 내용이 크게 후퇴하여 사실상 후퇴이행으로 볼 수 있음.
- 지난해 이행률이 가장 낮았던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 미이행에서 후퇴이행으로 진전된 것이 늘었지만 애초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행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약이행이 예산 배정이나 법 개정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정책의 성과나 예산 집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함.
-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음을 감안하면 힘찬경제 역시 그다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할 수 없고 남은 기간 동안 공약이행률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지 의문. 예산 배정과 법 개정에서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해 보임.

**3. 행복한 일자리**

공약 영역	세부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국민행복기금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1)-1.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행복기금을 산업 전반에 적용		○		• 기계연구원 ‘기계기술 기반 국민행복 기술개발사업’ 과제 10개를 선정 및 진행 중

	(1)-2.농업,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육성 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도 과학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일 자리를 창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전반에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육성 하여 과학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판단불가</li> </ul>
	(1)-3.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워크 센터 운영</li> <li>2011년도 부터 연구용역한 사업이었음</li> </ul>
(2)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2)-1.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6월 26일 발의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통과</li> <li>중소기업청 28개 창업선도대학과 업무협약 체결</li> </ul>
	(2)-2.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국정·교육과정」을 확정·발표, 공약에 부응하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불가</li> </ul>
	(2)-3.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경영·기술인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니어기술창업센터 전국 18개소 운영</li> </ul>
	(2)-4.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인재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20조 개정</li> <li>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li> </ul>
	(2)-5.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12월 31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됨</li> </ul>
	(2)-6.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통과</li> </ul>
	(2)-7.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
(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3)-1.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1470억 규모로 '13년: 254, '14년: 559, '15년 : 800 개 발</li> </ul>
	(3)-2.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0개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 체결,</li> </ul>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여부는 판단 불가	
	(3)-3.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펙초월 소셜리크루팅 시스템을 도입,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시행 중</li> <li>실제 스펙을 초월한 채용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li> </ul>	
(4)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찍이는 K-Move	(4)-1.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년 해외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외국 유치펀드가 국내 중소기업에 720억원 투자</li> </ul>	
	(4)-2.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드잡의 웹 사이트 등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운용 중</li> </ul>	
	(4)-3.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54억 규모 2000명을 대상으로 K-MOVE의 해외취업성공장려금 2,500명에 한해 지급예정</li> </ul>	
	(4)-4.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MOVE 멘토링, K-MOVE 스쿨 사업 진행</li> <li>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여부 확인불가</li> </ul>	
(5)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5)-1.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 지원 실시</li> <li>‘청년 일자리 연계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은 확인 안 됨</li> </ul>	
	(5)-2.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 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기준법 개정 안 계류 중</li> </ul>
	(5)-3.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기준법 개정 안 계류 중</li> </ul>
(6) 청년 창업 활성화	(6)-1.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 포함 4개 창업기획사 선정</li> </ul>	

	팅 등 지원				
	(6)-2.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6월 중 기청-다음카카오 550억 규모 청년창업 펀드 조성</li> <li>• 300억 규모 SK 청년창조경제 펀드 조성</li> </ul>
(7)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7)-1.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교육부 인력확충계획 발표</li> <li>• 소방관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li> </ul>
	(7)-2.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도 통신보안 분야에 1,370명 증원(전체 증원 인원의 23%)</li> </ul>
(8)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8)-1.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3월 19일 발의된 근로기준법 계류 중</li> </ul>
	(8)-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9월 16일 발의된 근로기준법 계류 중</li> </ul>
(9)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9)-1.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12월 26일 발의된 고용정책기본법 공포 및 시행됨 시행일 : 2014년 7월 22일</li> </ul>
	(9)-2.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12월 26일 발의된 고용정책기본법 공포 및 시행됨 시행일 : 2014년 7월 22일</li> </ul>
(10)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10)-1.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60세 정년연장이 법제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강행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li> </ul>
	(10)-2.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2천명 대상 교육 실시</li> </ul>
	(10)-3.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일자리 센터 설립,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는 확인불가</li> </ul>
(11) 상시·지속적 업무 고용관행 정착	(11)-1.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직의 추진 중이나 법 개정 안 됨</li> </ul>

	(11)-2.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하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공공기관·정부 중앙부처 등 814곳 중 275곳 정규직 전환 목표달성 미달</li> </ul>
	(11)-3.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상하였으나 효과는 확인불가</li> </ul>
(12)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12)-1.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8월 30일 발의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류 중</li> </ul>
	(12)-2.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8월 30일 발의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류 중</li> </ul>
	(12)-3. 법원에서 불법과건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과건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한국GM 특별근로감독 실시</li> <li>·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미실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li> </ul>
(13)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13)-1.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 확대하였으나 별도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 미시행</li> </ul>
	(13)-2.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함</li> </ul>
(14)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14)-1.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5월 31일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계류 중</li> <li>· 2014년 3월 14일 발의된 고용보험법 계류 중</li> </ul>
	(14)-2.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직종별 표준수령 계약서 계획</li> <li>· 화물운송업 표준계약서 고시</li> </ul>
(15)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15)-1.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동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5월 31일 발의된 최저임금법 계류 중</li> </ul>
	(15)-2. 최저임금제도가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11월 11</li> </ul>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일 발의된 최저 임금법 계류 중
(16) 대화와 상생의 정착	(16)-1.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 노동위원회법 통과되었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취지가 무색해짐
	(16)-2.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노사정대타협 파기됨
	(16)-3.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	•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함께하는 모임 가진 적 없음
(17)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17)-1.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 2013년 6월 4일 발의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계류 중
	(17)-2.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
<b>합계(48개)</b>		<b>14</b>	<b>18</b>	<b>16</b>	

**(1) 이행률 (후퇴이행 38%→미이행 33%→완전이행 29%)**

- 행복한 일자리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전체 세부공약 48개 중 14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29%를 기록함. 후퇴되어 이행되었거나 진행단계에 있는 공약은 18개로 38%이며, 미이행 공약은 16개로 33%에 달함.
- 이행률이 낮은 공약영역은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대화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등 주로 비정규직관련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행률이 높은 공약영역은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이었음.

**(2) 평가**

- 행복한 일자리 영역의 공약은 직무능력표준 도입, 청년창업펀드 조성, K-Move사업, 공공부처 일자리 확대, 벤처창업지원 등 청년층 고용 및 창업지원 관련 비중이 높음. 청년공약은 완전이행 되지 않더라도 부분이행 되었거나 이행과정 중인데, 그럼에도 청년고용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지난해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음.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이 대통령 공약설정 단계부터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임. 그럼에도 이중구조개선책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관련 공약 대부분이 미이행에 그치고 있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분발이 필요함.
-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강행하여 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위협받게 됨.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이라는 공약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정부가 노사정합의 과거 원인을 제공한 것은 큰 오점으로 지적 받을 만 함.

#### 4. 창의 산업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1)-1.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			• 2013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발족 및 운영
(2)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2)-1.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 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 2014년 기준 국내 총 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율을 4.3% 이행 중
	(2)-2.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		• '12는 35.2%, '13은 37.1%, '15년 38.8% 이행 중
	(2)-3.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		• 융합기술분야 지원 확대 방향으로 연구개발 중이거나 진통계화 되지 않음
(3)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3)-1.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 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 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방안 마련		○		•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진행 중,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는 추후 진행 예정
	(3)-2.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		•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지식재산 양적 성장에 비해 생태계 취약

					평가
(4) 인연성과 과학기술인 연구환경의 안정적 조향	(4)-1.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 체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 율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효율화 TF 구성, 자율성 연구 제고 방안 구 중</li> </ul>
	(4)-2.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 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 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국감, 비 정규직 연구직 비율 '13년 69.5%, '14년 61.9%, '14년 상반기 66.4% 로 조사</li> <li>• '여성과학기술 경력복귀 인 지원사업' 추진</li> </ul>
	(4)-3.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 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 적으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인종, 합 지원 계획', '17년까지 사학 연금의 90%까 지 보장계획</li> </ul>
	(4)-4.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 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 작책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2월 7 일에 발의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의원입법 법률 16년 12월 23 일 공포예정</li> </ul>
(5) 기술과 국민 행복을 위한 융합산업 육성과 브레인산업 육	(5)-1. 국민의 복지·생명·건강· 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 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 자 확대 -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 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 술기반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연구개발(R&amp;D)사업 예산은 증가되었으나, 에너지, 식량, 기후 변화 등 과학중단 기술기반 확충은 근저는 부족</li> </ul>
	(5)-2.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 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청에서 국 구민 행복 기술 지원 사업 중, 새로운 자리 창출 과는 근저 부족</li> </ul>
	(5)-3.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 도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2월 한 적-캄보디아 정 과학기술 센터 개소, 2015 년 2월 9일 한-라오스 농업 적정 기술 센터' 개소 이후 진행 중이 나 한국 ODA</li> </ul>

					비율은 OECD 최하위 권으로 분류됨
	(5)-4.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강화		○		• ‘뇌 과학 원천 기술’, ‘바이오 의료기술’ 융합 기술 산업 관리 중
<b>합 계(14개)</b>		<b>2</b>	<b>12</b>	<b>0</b>	

**(1) 이행률 (후퇴이행 86%→완전이행 14%)**

- 창의산업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전체 세부공약 14개중 2개만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이 7%에 불과함.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2개로 86%임.
- 이행률이 높은 공약영역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으로 각각 1개의 세부공약이 이행됨. 그 외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국민행복 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등 영역은 모두 후퇴이행된 것으로 파악됨.

**(2) 평가**

- 창의산업 분야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융합신산업 창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와 같이 공약목표가 너무 크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관련사업을 추진하여도 공약이행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공약 중에는 과학기술기반확충, 신산업·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정책의지만으로 이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과학기술인 복지관련 공약과 국가연구개발 투자 공약은 비교적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

**5. 행복한 농어촌**

공약 영역	세부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1.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			•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가결
	(1)-2.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농촌의 공적연금 가입율은 도시에 비해 낮음 • 건강보험료 소득·재산고려 차등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311천명→350)
	(1)-3.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 출신 산업기			○	

	<p>능요원이 영세 고령 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p>				<p>기 명시된 정책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연금 : 가입기준 폐지함</li> <li>•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 후 사후에 징수), 이자율 인하(3→2.5%)</li> </ul>
	<p>(1)-4.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지침시행중, 최저생계비 기준을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li> </ul>
	<p>(1)-5.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주민 선호도가 높은 복지 프로그램 10개를 선정하여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농촌 행복꾸러미」를 마련하여 연계</li> <li>• '2016 예산안'에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 전액 삭감</li> </ul>
(2) 농어촌의 의료·교육·보건 개선	<p>(2)-1.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등 보급 계획은 있지만 아직도 보급률이 낮음</li> </ul>
	<p>(2)-2.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급식시설 2015년 20개소 시범운영 중</li> <li>• 도우미지원:급여 1일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li> </ul>
	<p>(2)-3.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등 직업성 질환 연 구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li> </ul>
	<p>(2)-4.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교육 활성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통합운영) 권고기준안 강화</li> </ul>
	<p>(2)-5.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지원 15년 138억 9400명, 16년 125억 7700명 계획</li> <li>• 16년도 계획은 다소 줄었지만 5년간 지원 계획은 확대 편성 되어 있음</li> <li>• 공공기관채용: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7·9급 선발 확대</li> </ul>
(3) 식량자급률 제고를	<p>(3)-1.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상반기 시범운영 '15년 하반기 정상</li> </ul>

통한 식량안 보 체계 구축	도입				운영
	(3)-2.우량농지를 보전 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 산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됨.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 완화</li> <li>• 우량농지에 대한 농한 단기 이모작을 위한 단 기 임대차를 허용하 여 사료작물 생산 진</li> </ul>
	(3)-3.해외 식량 조달시 스템을 구축하고 일정물 량을 상시 비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타당성 조사 진 행 중 결과 대기중</li> <li>• 15년 말 기준 밥쌀용 8만 7천톤, 가공용 42만 7천톤 비축중</li> </ul>
	(3)-4.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개발위한 신 수산어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탈락, 사업 전면 초기화</li> </ul>
(4)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화	(4)-1.농어가 통신비 부 담을 경감시켜 IT와 농 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 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팜 확산 가속 화하기 위해 예산지원 강화('15 : 246억원 → '16 : 454)</li> </ul>
	(4)-2.농림수산식품 예 산의 10% 이상을 R&D 에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도 2184억원 배 정, 15년도 보다 축소 됨. 농식품부 예산에 1% 정도에 그침</li> </ul>
	(4)-3.농림수산업의 신 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 업 기준완화 및 추천 비율 향상 등 진입장 벽 완화</li> </ul>
	(4)-4.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공식품과 작 물들을 수출하고 있으 나, 규모가 미흡하여 보여주기식에 그침</li> </ul>
	(4)-5.친환경 농림수산 업의 생산·유통기반 구 축과 도시농업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를 구축</li> <li>•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 농업농장(이하 도시텃 밭) 개장, 사업을 확 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토지 및 국공유지 10 개소(118,800㎡)에 추가로 텃밭을 조성하 고 2024년까지 100 개소로 늘릴 계획</li> </ul>
	(4)-6.축산분뇨의 고품 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 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환경관리원'을 '14년 설립·운영</li> <li>•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위한 설비 구축 지원</li> </ul>
(5) 는 있 양 력 부 족 대 마 련 성 후 계 자 인 력 대 책	(5)-1.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 용제도 포함)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 류중</li> </ul>
	(5)-2.인턴제도를 포함 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지원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강화 (귀 어학교개설)</li> <li>•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인·창업농에 대한 소</li> </ul>

					규모 맞춤형 농지 및 지원과 교육, 지원센터 등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 166억원 반영
	(5)-3.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 지원사업은 진행중이나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중
(6)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6)-1.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 '13년 80만, '14년, 90만, '15년 100만원
	(6)-2.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5년 46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나며 4개 품목이 신규 도입 • 과수 종합위험보장 사업도 확대한다. 또 벼벼무사고환급, 보장비율 강화, 할인·할증 개선, 원예시설 가입면적 완화, 소·가입기준 완화 등 보험제도 손질 • 가축의 경우, 보험사업자 확대, 가입기준 완화
	(6)-3. 발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발작물에도 적용	○			•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15년 전체 항목으로 확대 지급 • 발고정 직불금(25만원/ha)이 새롭게 도입되고, 논에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을 할 경우 지급하는 발직불금 단가가 ha당 50만원('14 : 40만원/ha)으로 인상
(7)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비용 절감	(7)-1.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 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도입 안됨
	(7)-2. 농·수협이 농자재 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비용 절감		○		• 농협은 2017년까지 전국 3개 권역(안성, 군위, 장성)에 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
	(7)-3.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		• 사료구매 자금 지원은 있으나 시스템 개선은 없음
	(7)-4.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 농기계임대사업소 15년 379개소 운영 16년 410여개소 계획
	(7)-5.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 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 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		• 올해 트랙터 등 4025대 지원, 농작업 대행 100만ha 내년 대행면적 목표 108만ha • 농기계사업단은 2014

					<p>720개소에서 2015년 750개소로 증가</p>
	(7)-6.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사업단, 가축분뇨자원화 설비 지원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농자재산업진흥대책 수립 후 진행중</li> </ul>
(8)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이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8)-1.생산자조직 및 생협외의 가공, 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30개소 설치 운영중</li> </ul>
	(8)-2.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재료 미이용시 전통식품인증 취소</li> </ul>
	(8)-3.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식업체 식자재 직거래 산지페어 개최</li> <li>• 식품·외식업체 등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12:30%→2016년 계획 '17:35)</li> </ul>
(9) 농어업전면 개편	(9)-1.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개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재해보험 : 가입률 : ('14) 16.2% → ('15) 21.8</li> <li>• 가축재해보험 : ('14) 89.1% → ('15) 90.7%</li> <li>• 농작물대상품목 50개로 늘어남</li> <li>•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li> </ul>
	(9)-2.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대응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li> <li>• 가품 대책으로 용수준등 확보, 저수지 추가 건설, 수리시설 개선 등의 사업 계획</li> </ul>
(10) 수산업을 환경변화감안한 신성장동력화	(10)-1.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이력제 개선 진행중, 2016년 중점추진품목 17개 확대</li> <li>•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등 6개 수산동물감염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리나라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li> </ul>
	(10)-2.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사막화 대응하며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바다숲조성, 바다목장, 종묘방목등의사업 실시, 16년 바다숲 24개소 3,064헥타르 신규 조성</li> <li>• 감사원 감사 결과 인공어초 4개중 1개는 관리 부실로 효과 없음 나타남</li> </ul>
	(10)-3.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복·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2020년</li> </ul>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까지 전복 10개·해삼 50개 확보) 시행</li> <li>2014년 기준 생산목표 달성 수준이 해삼 7.6%, 전복 14.3%에 그침</li> </ul>
	(10)-4.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복원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4개소를 개발 계획 수립</li> </ul>
	(10)-5.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양어업 업체 용자지원 중이나 업체가 영세하여 뚜렷한 성과 없음</li> <li>기존 원양어업기지를 특산물 생산기지로 특화해 양식·가공 등을 포함한 해외 수산물 생산량을 '17년까지 10% 늘릴 계획</li> </ul>
(11) 미래 수산업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물 생산체제 구축	(11)-1.해양수산물부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신설.</li> </ul>
	(11)-2.수산물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적 통합관리했으나 통합관리 하는 부서 없음.</li> <li>해양수산물부 내 해양환경정책과 운영</li> <li>해양수산물부 주재 시·도 해양수산물 정책협의회 개최</li> </ul>
	(11)-3.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물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1월부터 전국동시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제도 실시</li> </ul>
	(11)-4.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확대,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li> </ul>
(12) 원산 대창출을 위한 산림자원을 증진	(12)-1.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치유지도사 제도 시행 (13년 시작)</li> <li>'14년 7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부를 개정한 법률안으로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li> </ul>
	(12)-2.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숲지도사, 산림탄소전문가 도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중</li> </ul>
	(12)-3.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별로 전문화된 숲가꾸기를 '17년까지 30만ha로 확대 실시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 계획 실행중</li> <li>천연보육림 규모는 점차 감소 추세</li> </ul>
	(12)-4.도시녹화운동 전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숲16년 1313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27개소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li> <li>• 15년 402개소 16년 427개소</li> </ul>
	(12)-5.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재배단지 규모 확대 위해 산지관리 법령 제정</li> <li>• 약초식물재배단지 30곳 조성</li> </ul>
	(12)-6.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산업 활성화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위해 노후시설 15년도 1530억 30개 지원, 16년도 1651억 51개 지원 예정</li> </ul>
(13) 산림재난예방을 위한 산림재해구축사업	(13)-1.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4월 ‘산림복지진흥원’ 개원을 통해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계획</li> <li>•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li> </ul>
	(13)-2.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17년 방지체계 구축 계획 수립, 계획대로 진행중</li> </ul>
	(13)-3.산림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중, 산림탄소등록부사업 시행,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을 수립·시행 계획</li> </ul>
	(13)-4.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교육센터 지정·설립해 교육 진행중</li> <li>•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 산림분야 진로탐색, 숲 속 명상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계획</li> <li>• ‘숲에서 행복찾기’, 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힐링캠프’ 등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계획</li> </ul>
(14) FTA협상시 농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14)-1.한중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수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 비준 대응 상생기금 10년간 1조 원여야정 합의, 부족한 부분 많음</li> </ul>
	(14)-2.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농업대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FTA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함</li> <li>• DDA·FTA 농업분야 통상현안 지역설명회 등 노력은 하나 농민들은 대책이 부실하다 비판있음</li> </ul>
(15) 지속가능산림육성	(15)-1.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축산단지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기존제도)</li> <li>• 가축분뇨 친환경축산업 지자체 별로 시행</li> </ul>

					중
	(15)-2.축산물 선진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li> <li>•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를 갖춘 축산물 패커 내실화</li> </ul>
	(15)-3.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화 시설자금 2600억원 지원 계획, 20% 지원 사업 80% 융자사업</li> </ul>
	(15)-4.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사료직거래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등 저리 융자지원</li> </ul>
<b>합 계(62)</b>		<b>12</b>	<b>46</b>	<b>4</b>	

### (1) 이행률 (후퇴이행 74%→완전이행 19%→미이행 6%)

- 행복한 농어촌 전체 세부공약 62개중 12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19%을 기록함. 본래 공약이 후퇴되거나 부분 이행된 공약은 46개로 74%가 되어 대부분을 차지함. 미이행 공약은 4개로 6%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논 이모작 발작물 적용, 쌀 직불금 확대, 해양수산물 조직개편,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은 완전이행 되었음.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사료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약은 진행되지 않음. 또한 농업 R&D 예산은 점차 줄고 있으며, 예산의 약 1% 정도만 배정하고 있어 부분이행에서 미이행으로 재 분류함. 대부분의 공약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진행중인 사업이 많고, 사업 규모, 사업 효과가 미흡하여 부분이행에 그침.

### (2) 평가

- 농어촌 공약은 기존 제도·사업 등을 활용한 공약으로 새로운 시도보다는 꾸준하게 유지 진행 되는 공약이 많았음. 또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쪼개서 공약으로 만들어져 성과여부를 명확하기 평가하기 어려움.
- 특히 후계인력양성 부분은 농어촌 모두 단순 교육 프로그램에 그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임.
- 시범운영, 계획 수립 등 아직 초기 진행단계의 사업이 많아서 공약 실행여부의 판단이 불가함
- 농업 6차 산업정책에 대한 사업은 활발하나 농민과 농촌을 위한 기본적 사회안전망시스템 마련을 위한 복지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였음. 또한 농림수산물식품 예산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업 신 성장동력세력 구축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

## 6. 안전한 사회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	-------	----	-----	----

		완전 이행	후퇴 이행		
(1)성폭력 피해자 보 호 및 치료 지원 강화	(1)-1.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을 통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조력인 제도’ 2013년 12월 시행.</li> <li>▪ 2013년 7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 시행.</li> <li>▪ 진술조력인 15년 기준 전국 70명(14년-60명) 올해 인원 미정,</li> <li>▪ 전담 국선변호사 15명 -&gt; 17명(16.1월 2명 증원/전주, 제주)</li> <li>▪ 인원 부족 평가.</li> </ul>
	(1)-2.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현상 개선,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27개(14년) -&gt; 30개(15년 6월)</li> <li>▪ 성폭력 상담소 : 96개(14년) -&gt; 161개(15년 6월)</li> <li>▪ 2015년 6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이 '해바라기 센터'로 통일. 확대 추진 중 (34개-&gt;36개)</li> <li>▪ 대도시 밀집현상 등을 개선 미진. 현재 진행 중인 공약.</li> </ul>
	(1)-3.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 4%→5%), 거주이전 지원 강화, 피해자 간병목적 돌봄서비스 지원,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대비용 지원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1.1. 시행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6%로 상향.</li> <li>▪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동안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li> <li>▪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1개월 동안 간병비를 지원.</li> <li>▪ 거주이전 지원강화 : 법무부 이사비 지원</li> <li>▪ 여가부 : 주거지원사업/그림홈 매년 40% 확대 중</li> <li>▪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간병비, 돌봄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아직 미흡함.</li> </ul>
	(1)-4.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윈스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성범죄 예방과 수사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성폭력 대책과’ 신설.</li> <li>▪ 올해 경찰서 126곳에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운영.</li> <li>▪ 윈스톱 지원센터 전국 25개 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법률상담,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li> </ul>

	(2)-1.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5.05.23, 김희정 의원발의) 법사위 계류</li> <li>▪ 김희정 의원 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임.</li> <li>▪ 2014년 기준 아동 성범죄 전체 44.2% (강간 범죄 39.4%)</li> </ul>
(2)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2)-2.판결 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기준 상향이 2013년 시행되어 하한선도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li> <li>▪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및 무죄 비율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지 않음.</li> <li>▪ 2015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경찰의 검거율은 2011년 84%에서 2015년 8월 현재 97%까지 개선됐지만, 같은 기간 구속률은 13%에서 9%대로 떨어짐.</li> <li>▪ 2014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2만1389명 중 2809명만 구속됨. 구속률은 10.8%로, 피의자 10명 중 한 명만이 검찰 처분 전까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셈임.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법 적용과 국민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li> <li>▪ 여성번호사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08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항소해 법원이 받아들인 366건 중 81.7%인 299건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음. 또한 최근 급증하는 몰카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대체로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적용하는 경향이 보여짐.</li> </ul>
	(2)-3.성범죄 사건의 경도 방우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진술조력인제도는 시행되어 있음. 그러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는 제도임.</li> <li>범죄 부인 방지를 위한 전문가 증언제도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판단됨.</li> </ul>
	(2)-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 2월 13일 성매매·음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해 최근 3년간 5만 5758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힘.</li> <li>2013년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전년보다 129.5% 증가한 3만 2330건을 기록. 2011년에 9343건, 2012년에는 50.8% 증가한 1만 4085건으로 집계됨.</li> <li>방통심의위는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2년 9월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2013년부터는 모니터링 요원을 2배로 증원하고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을 추진해옴.</li> </ul>
(3) 경찰 인력 증원, 수보수 및 당현실화	(3)-1.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증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하반기 순경 채용에서 ‘4262명’을 뽑은 것에 이어 2015년에도 순경 약 7600여 명, 기타 특채로 600여 명을 채용함.</li> <li>현재까지 경찰인력 총 15,500여 명을 증원함. 2017년까지 2만명 증원 가능할 것으로 보임.</li> <li>2016년도 순경 채용계획만 3,566명, 기타 경력경쟁 채용 인원이 372명임.</li> </ul>
	(3)-2.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점진적 축소, 우범자 관리·학교폭력 전담·112종합상황실에 우선적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8월 기준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62명으로 감소 추세. (2012년 498명, 2014년 479명)</li> <li>우범자 관리의 경우, 전과 22명이었던 일명 ‘트렁크 살인’ 김일곤이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것이 밝혀</li> </ul>

				<p>지며 논란이 있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도 현재 경찰에 등록된 전국의 '우범자' 4만 명 가운데 10% 이상은 어디 있는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지역 관리 대상 우범자는 2012년 6939명, 2013년 7186명, 2014년 73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이 중 소재불명자는 2012년 1368명, 2013년 1146명, 2014년 1152명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우범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음. 2014년 기준 경기 642명, 부산 400명, 대구 279명, 인천·전남 각 234명의 우범자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자료)</li> <li>▪ 서울시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21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1,343곳으로, 1인당 담당 학교는 평균 6.4개교(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자료)</li> <li>▪ 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9,521건으로 2013년보다 10% 증가함.</li> <li>▪ 2015년 상반기 전국에서 신고된 학교폭력은 36,964건으로 하루평균 204건 꼴에 달했음.(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자료)</li> </ul>
	<p>(3)-3.경찰 기본급을 공휴일 안직 수준으로 인상, 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추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혁신처가 2015년 12월 24일 일법예고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급상급수당을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더불어 출퇴근 동업수수당 신설(1회 3천, 日 최대 3만원) 등이 포함됨.</li> <li>▪ 경사 기본급 인상의 경우 일반직 7급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 것을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함(2016.1.8. 개청). 다만 아직公安직</li> </ul>

					<p>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경사(7급) 1호봉 1,704,100원/, 공안직 7급 1호봉 1,784,500원, 일반직 7급 1,672,800원)</p>
(4)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	(4)-1.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위험정보 접근,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119신고서비스 시행 중</li> <li>•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앱 출시(2014.02). 몇몇 지역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li> <li>• U-안전도시 몇몇 지자체(수원, 울산 등) 시범사업 수준임.</li> </ul>
	(4)-2.분산된 재난관리업무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노스, 76억원 규모 '긴급 신고전화 통합구축 사업' 계약. 2016년 운영예정</li> <li>•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6월16일까지 약 7개월간 재난망 시범사업 진행</li> </ul>
	(4)-3.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 전문가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li> <li>• 2015.02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위원 위촉함.</li> </ul>
	(4)-4.119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서 구급차 응급병원화 시스템 구축 국정과제로 삼음.</li> <li>▪ 재난안전 취약지역 안전지킴이 캠페인 등 소방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시행 중.</li> <li>▪ 119구급차량-15년도 279대 도입, 올해 228대 도입 예정.</li> <li>▪ 자비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장갑을 산다는 등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방재정 열악함.</li> </ul>
(5)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5)-1.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교육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li> <li>▪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li> </ul>



				<p>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12.30&gt;</li> </ul>												
(5)-2.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			<table border="1"> <tr> <td></td> <td>2012년</td> <td>2013년</td> <td>2014년</td> </tr> <tr> <td>세 동기 보급 예산</td> <td>23억</td> <td>19억</td> <td>13억</td> </tr> <tr> <td>사업 총보예산</td> <td>5억</td> <td>8억</td> <td>10억</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중시설 세동기보급율이 높아진 관계로 세동기보급예산은 감소한 반면 세동기이용 홍보 예산이 증액됨</li> </ul>		2012년	2013년	2014년	세 동기 보급 예산	23억	19억	13억	사업 총보예산	5억	8억	10억
	2012년	2013년	2014년													
세 동기 보급 예산	23억	19억	13억													
사업 총보예산	5억	8억	10억													
(5)-3.OECD국가 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해 도서,내륙 산간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구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헬기 2013년 4곳 배치, 2014년 1대, 2015년 1대 추가배치. 올해 확충계획 미정.</li> </ul>												
(5)-4.응급처치자의 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903412 /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현재 국회 계류중</li> <li>주요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경우에</li> </ol> </li> </ul>												

					<p>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p> <p>2. 기금의 사용·용도에 선의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따른 사사고피해의 보상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1조 제9호 신설)</p>	
(6)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	(6)-1.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전담조직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구성 운영</li> <li>식약처 소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6월 30일 오픈</li> <li>2013년 9월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내림. 정의를 내린 후 별도의 통일된 유해기준을 마련할지는 않음. 해당법을 별도로 별도로 기준을 운용</li> </ul>	
	(6)-2.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 유통매장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대하여 '17년까지 계산대가 설치된 모든 매장(전국 8만개)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 추진 중</li> <li>'13: 42,134 → '14 : 52,966 → '15 : 62,966 → '17년까지 8만 개소</li> <li>중소매장(슈퍼마켓) 무상으로 설치 중</li> </ul>	
	(6)-3. 업체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위생법 제49조 개정(2013.7.30.)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됨</li> <li>16년에는 연매출 1억 이상 제조·수입업체와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확대</li> <li>17년 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전체 도입</li> </ul>
	(6)-4. '식품표시제'를 식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는 이미 1962</li> </ul>

	<p>의무화,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해 먹을거리 용기 관리</p>				<p>년 식품위생법이 국내에 첫 도입되면서 시행된 뒤 수십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3에서 그린마크제도 지정</li> <li>▪ 그러나 GMO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음</li> </ul>
	<p>(6)-5. 소비자 위생점검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 최우선 급식문화 조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점검참여제는 식품위생법 (2013. 7. 30 공포) 개정하여 지자체 또는 지방청에서 단속을 나갈 때 소비자가 참여 가능케 개선.(2014년 1,318명, 2015년 990명이 참여)</li> <li>▪ 위생점검요청제는 2014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하여 요청요건이 20인 이상이었던 규정을 5인 이상으로 완화 개정(2015년 요청건수 없음).</li> <li>▪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 관련하여 “식품안전관리 지킴”을 매년 초 확정하여 시도공무원에게 하달.</li> <li>▪ 2015년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최소 한 번 이상씩 점검을 받았고, 수거검사도 1,700건 실시</li> <li>▪ 과거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2,392개소)</li> </ul>
<b>합 계(24)</b>		<b>8</b>	<b>11</b>	<b>5</b>	

(1) 이행률 (후퇴이행 46%→완전이행 33%→미이행 21%)

- 안전한 사회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4개중 8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33%에 불과.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1개로 46%, 미이행 공약은 5개로 21%에 이룸.

(2) 평가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4대약 근절’ 관련 공약들의 이행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비한 지점들이 아직 존재함.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분야는 여전히 본질적인 부분에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피해자 지원혜택들이 확대되고 각종 제도들이 운영되지만 지원규모가 작거나 형식상 운영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함. 성범죄 관련 공약 이행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대목임.
-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약 중 경찰과 관련된 3개 공약은 대체로 이행되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것이 공안 정국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깊음.
- 세월호 참사 1주년 이후 국가안전처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주무하지만 아직 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된 투자가 필요함.
- 식품안전 분야 관련해서는 식약청을 처로 승격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7. 정부개혁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개방과 통정 공유를 창조정부 구현	(1)-1.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해 공공부문 정보자원 통합·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10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li> <li>08년부터 정부지식행정시스템(GKMC)가 ‘지(G)-클라우드’로 2015년 12월 구축되어,</li> <li>한국정보화진흥원 예하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2013년 9월 설립. 정부가 생성한 자료를 민간에 개방을 진행 중임.</li> <li>「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15.12에 시행되어, 2016년 각 부처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발표됨.</li> </ul>
	(1)-2.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 국·가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지원하고 한국형 미래전략 수립을 추진할 ‘미래전략센터’를 개소(2014.09)</li> <li>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15년 미래선동형 융합연구단’을 선정하여 4개분야(지구온난화, 고령화, 사물지능통신, 광물자원개발) 과제를 수행함. ‘자가학습형 지능융합 슈퍼브레인 핵심기술 개발 융합 연구단’(이하 사물지능통신 연구단)을 출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국</li> </ul>

					<p>가건설에 기여할 예정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9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행.</li> <li>정부통합전산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지(G)-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시기별 필요에 따라 정보자원을 필요할 만큼만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7년까지 전자정부 업무 시스템 1,233개 중 약 60%에 해당하는 740개를 G-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2016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은 78개로 전년에 비해 76.5% 증가한 3,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됨.</li> <li>미래전략 시스템 구축 미흡.</li> </ul>
	(1)-3.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	
(2) 개인별 맞춤 '정부 3.0' 시대 달성	(2)-1.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04.부터 전 부처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나라e음) 구축 및 사용</li> </ul>
	(2)-2.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민간의 양성과 창의성을 해결책 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서울시 택시업계와 의 포트홀 신고 시스템, 지하매설배관 정보 공유시스템 등 다양한 사례 적용을 발표함. 2015년의 경우 정부 3.0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조력기관 대상 심사를 진행 중임.</li> <li>행정자치부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16.1.29.일자로 공고하여 현재 의견수렴 중임.</li> </ul>
	(2)-3.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추적				○

					<p>추진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기관별 지식정보책임관(CKO), 담당자 지정하였으며, 효율적 지식관리 체계 정비 및 지식활용 극대화 추진 중임.</li> <li>민간-정부 지식이 융합·활용되도록 전문가 등 민간에도 개방 확대 예정(16년 이후)</li> </ul>
	(2)-4.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2)-5.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12.29 시행됨.</li> <li>작년 부처간 정보공유 2천여건 이상. 2014년부터 본인이 동의만 하면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li> <li>2016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읍면동 지허브화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시군구 체계와 함께 「읍면동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함.</li> </ul>
(3) 국무회의 단부강화 및 조직 혁신	(3)-1.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대폭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년 정홍원 국무총리 사퇴 이후 국무총리 보들이 출사퇴임. 이완구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성완종 리스 실적' 사건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li> <li>2015년 총 57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박근혜 21회, 황교안 국무총리 19회, 이완구 전 국무총리 6회, 정홍원 전 국무총리 3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8회로 국무회의를 주재함. 총리 주도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li> </ul>
	(3)-2.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잇따른 국무총리 인사실패 및 뇌물 수수사건 등으로 인해 국무총리 중심의 국무회의 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했음.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 교육사 회 문화부총리(교육부장관)가 신설.</li> <li>'부처 단독으로 해결 곤란한 과제'를 전담한 단고 하지만 그 역할이 보여지지는 않음.</li> </ul>
	(3)-3. 예산·인사·조직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총리·장관 18</li> </ul>

	<p>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장관제' 확립</p>			<p>명 중 6명이 여당 지역구 의원이었음. 2016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출사퇴직을 진행하여 책임장관제가 확립되지 못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정부 들어 2014년 12월 말까지 정부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 공백이 1개월 이상 발생한 곳이 총 296곳이었음. 공석이 긴 곳은 1년이 넘는 곳도 있었음.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인사를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li> </ul>
	<p>(3)-4.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후 단행</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정부의 초기 정부조직개편안이 52일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정도로 각계 의견수렴과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였음.</li> <li>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51개)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변경.</li> <li>작년 정부조직개편이 세월호참사 이후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아직 문제점들이 남아있음.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나 생기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과 상의한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진행하려는 측면이 여전히 강함.</li> </ul>
<p>(4)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국민증거</p>	<p>(4)-1.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증가에 필요한 자원 마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예산안은 유급사·중복사업 600개를 조기에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10%가량 줄이고 있음. 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2조원가량 절감 추진 중임. 그러나 부족한 세원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임.</li> <li>기획재정부가 '20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함. 기획재정은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해 운영을 목표로, 평가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 올해 예산 기준 58조원 규모임.</li> </ul>

					이 결과를 내년도 예산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4)-2.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 재정지출, 재량지출, 재정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세출절감 시스템을 위한 세출절감 정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재정사업평가 등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단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미흡함.</li> <li>총량제한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시스템은 부재함.</li> </ul>
	(4)-3. 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복지사업 통·폐합 등으로 복지지출 실효성 높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2.8 사회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li> </ul>
	(4)-4.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자투자사업의 미래 부담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02부터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1년 시범시행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임. 현재 심사세부기준 마련·시행에 착수함.</li> <li>미래 재정부담 사전 공개 이행사항 없음.</li> <li>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등이름으로 재도입하여 미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li> </ul>
(5) 조세정의의 확립	(5)-1. 감면제도를 기존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세법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대다수 전환.</li> <li>2015년 초에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논의 없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함.</li> </ul>
	(5)-2.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20억으로 확대함에 따라 탈세 제보로 인한 추정액이 1조 5301억으로, 작년 대비 15.8% 증가. 이외 마땅한 실적 없으며,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보고는 ‘뺨뺨기 보고’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감론을 박. 당초 지하경제 규모 축소로 인한 확보 목표액은 27조 2000억. 실적이 미비하여 공약을 이</li> </ul>



					<p>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13년 개정이후 15년 재개정)</li> <li>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 확대(4000만원-&gt;2000만원)</li> <li>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방지법 통과(13년 4월)</li> </ul>
	<p>(5)-3.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p> <p>-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방지법 제고 등</p>	○			
	<p>(5)-4.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감면 정책 등 부자 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li> <li>고용창출관련 세제가 개편되기 하였지만,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서민지원 관련 조세체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li> </ul>
(6)국민대타협을 통한 조세수준 적정	<p>(6)-1.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대타협위원회 미설치</li> <li>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li> </ul>
	<p>(6)-2.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 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대타협위원회 미설치</li> <li>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li> </ul>
(7)공공부문 투명한 경영 강화	<p>(7)-1.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 공개,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2 공공부문 부채 현황 발표. 2015.4 공공부문 체계적인 부채 관리보고서 발간함.</li> <li>열린 재정, 재정고 등 각각 부문의 재정관리 시스템은 실시 및 존재 중이지만, 시스템 하나로 구현되지는 않음.</li> </ul>
	<p>(7)-2.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p> <p>-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결산기능의 연계 강화</p> <p>-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강화</p> <p>-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11월 14일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자율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년 3월 24일 제정됨.</li> <li>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 근거는 부족함.</li> <li>‘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16년 5월 서비부스 예정임. 관련 세부 추진사항 진행 담당 부서 재정고 답변 거부.</li> </ul>

	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8)공공기관 경영 책임 강화	(8)-1.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임원자격기준소위’ 미설치 됐으며, 기재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됐으나 구속력은 없는 추상적인 자격요건만 제시함.</li> <li>■ 2015년 국정감사서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중 77명이 대선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내려왔다고 지적함. 전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32%가 낙하산인 셈.</li> </ul>
	(8)-2.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단종중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관장이 책임경영부실 책임지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12.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경영평가 편람 의결.(경영성과협약제 전환)</li> </ul>
	(8)-3.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 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심사 및 사후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적으로 구분회계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의 2014년 전체 부채 177조원 중 공공요금 관련 부채가 148조원(한전회사 부채 포함)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2014년 부채증가분의 대부분이 공공요금에 기인하고 있다는 부채증가의 책임 소재 명확히 하는 추세</li> <li>■ 공공기관의 대한 사전 타당성심사 및 사후 심층평가제도가 강화되었다는 근거는 없음.</li> </ul>
합 계(27)		6	14	7	

(1) 이행률 (후퇴이행 52%→미이행 26%→완전이행 22%)

- 정부개혁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7개중 6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22%에 불과. 대부분 공공부문 정보자원 통합·개방(정부3.0) 등에 대해 이루어짐.
-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4개로 52%, 미이행 공약은 7개로 26%로 나타남. 책임총리, 조

세정의, 공공부문 개혁 등에서 공약 이행률이 저조함.

## (2) 평가

- ‘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분야는 형식상 노력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책임총리제가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여전히 청와대의 영향력이 높음.
-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공약들이 대다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벌 중심 조세정책으로 서민들의 피해만 증가하는 상황으로 공약이행의 의미가 상당히 후퇴함. 또한 지하경제 규모 축소 같은 추상적인 공약은 뺄리기 공약이행이 이루어져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법인세 정상화, 부가감세 철회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이 요구됨.
- ‘증세 없는 복지’가 비현실적인 정책기조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복지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사·정 각계각층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 되어버림.
- 정부 3.0과 창조 정부 공약의 경우, 공약이행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공공부문, 공공기관 관련 대선 공약도 공약이행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채가 1000조가 넘어선 만큼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함.

## 8. 국민대통합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1)-1.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관련자와 유족 명예 회복, 보상·예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3.12.05.)</li> <li>▪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출범(2014.10.13.)</li> <li>▪ 제 1 차 (14.11.3~15.1.30), 2 차 신고 접수 (15.3.2~15.5.29)로 130여 건 정도 신고 접수됨. 해당 건에 대해 심사 후 보상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li> <li>▪ 현재 3차 신고 접수 중 (2015.10.1.~2016.3.31.)</li> </ul>
	(1)-2. 부마민주주의 재단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지원 관련 조항을 담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었으나 재단 설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li> </ul>
(2)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2)-1.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되는 ‘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부	<p>급조치'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li> <li>-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li> <li>-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li> <li>-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li> </ul>				<p>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등 21인(박근혜 포함), 2012.11.26. 제안) 계류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2012.12.24. 민주당 전해철 등 17인 제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해당 긴급조치를 1,3,4,9호로 규정해 긴급조치 7호는 제외되어 있음</li> </ul>
	<p>(2)-2.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으로 구성</li> <li>-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등 21인(박근혜 포함), 2012.11.26. 제안) 계류 중</li> </ul>
	<p>(2)-3.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건의와 전과기록 말소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등 21인(박근혜 포함), 2012.11.26. 제안) 계류 중</li> </ul>
<b>합 계(5)</b>		<b>0</b>	<b>1</b>	<b>4</b>	

(1) 이행률 (완전이행 0%→미이행 80%→후퇴이행 20%)

- 국민대통합 분야의 경우 공약 4개가 미이행, 1개만이 후퇴이행으로 완전이행률이 0%에 그침. 2015년에 진행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혀 진전된 것이 없는 분야임.
- 그나마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신고 접수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진전된 상황임.

(2) 평가

- 국민대통합 분야 공약은 지난 2년차 평가에서도 완전이행된 공약이 하나도 없었음. 집권 전반기를 지난 이번 평가에서도 1개의 공약만이 부분적으로 이행중일 뿐, 완전히 이행된 것이 전혀 없음.
- 부마민주항쟁법이 시행되고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었음.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신고 접수

를 2차까지 진행했고, 보상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제한해 2차 신고 접수까지 접수된 건이 130여 건에 불과함. 또한 부마민주주의재단은 여전히 설립되지 않고 있음.

-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의 경우 근거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임. 곧 19대 국회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논의되지 못한 상태로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임.
- 국민대통합 분야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상처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겠다며 스스로 내걸었던 약속들임. 그러나 집권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이행된 부분이 없음. 특히 지난 1년차와 2년차 평가에 이어 진전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보면 국민대통합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이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9. 정치쇄신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투명한 고인위 한개 명주영 운정당	(1)-1.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4.01.03., 새누리당 김태원 등 15인 제안)이 국회에 계류중</li> </ul>
	(1)-2. 비례대표의 밀실 공천 의혹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이행된 것이 전혀 없음.</li> </ul>
	(1)-3. 선거 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공직선거법 상 해당 내용 없음</li> <li>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4.01.03., 새누리당 김태원 등 15인 제안)'에서는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4.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로 공약 파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모두 공천함.</li> <li>현재까지 법률 개정이나 추진 상황 없음.</li> </ul>
	(1)-5. 공천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천 금품 수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개정)하고, 벌금형의 선고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동안 제한함. (공직선거법 19조5호, 47조의2, 230조6항 / 2014.02.13. 개정)</li> </ul>
	(1)-6.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2013.06.27/민주당 이원욱 외 11인 제안, 2013.07.02. 민주당 박완주 외 12인 제안)' 계류 중</li> </ul>
(2) 일하는 공정을 위한 국회 개혁	(2)-1.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5인 모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있음.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 1명)</li> </ul>
	(2)-2.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구성됨.(공직선거법 제 24조, 2015.06.19. 개정)</li> <li>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선거법 제24조 7항)</li> </ul>
	(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 제44조, 제45조 유지</li> <li>2014년 9월 3일, '철도비리' 혐의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2015년 8월 13일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2)-4.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으로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법 해당 조항(45조) 개정없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li> </ul>
(3)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3)-1.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와대가 2015년 12월 21일 오후, 2명의 부총리를 비롯한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함.</li> <li>황교안 국무총리는 2015년 12월 21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과 실제로 제청을 하는 것이 다른 측면이 있다, 충분히 필요한 얘기가 오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함.</li> <li>2015.1.12.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장관 인사권 보장에 대한 질문에 “장관도 모르는 사유가 있을 경우 걸러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li> </ul>
	(3)-2.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회균등촉진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석훈 의원 발의)이 2015.07.27.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li> </ul>
	(3)-3.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량평인사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리와 장관 등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 슬한 문제점을 드러냄.</li> </ul>
	(3)-4. 국회를 존중해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11월 18일, 2014년 10월 29일, 2015년 10월 27일에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진행.</li> </ul>
(4)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4)-1.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조사권을 부여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됨.(2014.03.18.) 그러나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되었음.</li> </ul>
	(4)-2. ‘상설특별검사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검사의 임명 등에</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나 상설특검이 아닌 제도특검 법안.
	(4)-3.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이 제정(2015.03.27.)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li> </ul>
합 계(17)		3	3	11	

(1) 이행률 (미이행 65%→완전이행·후퇴이행 18%)

- 정치쇄신 분야 17개 공약 중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11개로 미이행률이 65%였음. 지난 2년 평가의 71%에 비해 3개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실상 이행된 3개의 공약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과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의 경우,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공약에서 후퇴되어 이행된 것은 3개로 18%임. 공천 금품 수수시 처벌 규정과 특별감찰 관제·상설특별검사제 등이 후퇴된 형태로 입법된 이후 변화된 것이 없음.

(2) 평가

-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정치쇄신 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은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워짐.
-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파기함. 정당의 공천 과정 민주화 역시 20대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등 말 그대로 '정치쇄신'을 위한 공약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오히려 파기되었다는 것은 정치쇄신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부재했던 것이라 볼 수 있음.

10. 검찰개혁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	(1)-1.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 김수남 검찰총장을 선발할 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함.</li> <li>인사청문보고서에 김수남 검찰총장의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포함되었으나, 국회 청</li> </ul>



				<p>문화 강행함. 국형식 문회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p>
(1)-2.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실련에서 검찰 인력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내부인사공개 거부함.</li> <li>검찰인사위원회가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등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등 비공개인사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등 전혀 없음.</li> </ul>
(1)-3.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장급 직위 축소(55→49)('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4.01.10.)) 이후 순차적으로 감축은 진행하지 않고 있음.</li> <li>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름.</li> <li>16년에 아직 감축 계획 없음</li> </ul>
(1)-4.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 철폐, 부적자를 승진에서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진행하여, 부장검사를 부부장검사로 배치는 등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있음.</li> <li>실효성에는 의문.</li> <li>내부인사 정보는 비공개.</li> </ul>
(1)-5.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견 직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69명. 파견 외부기관 2013년 32곳, 2014년 34곳, 2015년 41곳임.</li> <li>외부기관 파견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3.04.01.(민주당 김동철 등 13인 제안), 2013.09.13.(민주당 정청래 등 10인 제안) 법사위 계류 중.</li> <li>법무부 과장급 이상을 맡고 있는 검사수도 29명으로 검찰이 법무부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음.</li> </ul>
(1)-6. 검사 임용 시 예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임용(2013</li> </ul>

	후보를 선정해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p>년 선발)시부터 인성심사를 강화해 조직 내 지층별로도 지층별 심층심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단계 평가에</li> <li>▪ 인성 검사 전에 예비후보 선정이나 일정기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음.</li> <li>▪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의 경우 법무연수원 교육과 평가를 수료 후 실무 투입하는 형식.</li> </ul>
(2) 비리 검사 퇴출	(2)-1.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검찰청법 개정안 2016년 현재 소관위 심사중.</li> </ul>
	(2)-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자는 조기에 퇴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가 대상자에 올라 논란이 진행되었음. 직무수행능력이 아닌 보복성 인사라는 측면이 다수 존재하였음.</li> <li>▪ 심층적격심사를 통해 1명의 부부장검사가 퇴출되었으나 퇴직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임. 명확한 기준 없는 검사 적격심사는 검사 길들이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li> </ul>
	(2)-3.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2014년 대조직 현황' : 현재 과체직원 61명 중 과견직원이 34명으로, 직원의 절반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타부처나 지검에서 파견된 인원으로서 과견직인원으로서 제기되었으나, 개선된 제도 등이 없음.</li> <li>▪ 2015년 1월, 서울고검 감찰본부 신설</li> <li>▪ 과견직 등으로 구성된 감찰본부는 권한 미비.</li> </ul>
	(2)-4. 징계의 사유를 향상, 급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 강화(뇌물의 5배 부과)와 징계의 사유 구체화 한 '검법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21.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차는 간소화되지 않았음.</li> </ul>
	(2)-5.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직 등 변호사 결격사유 강화 ‘변호사법 개정안’ 2015.7.1. 시행.</li> </ul>
(3)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3)-1. 대검찰청 중양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지검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1.6. 검찰이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부패범죄수사단 특별수사단을 신설함. 이는 대검 반부패부에 직접 수사기능을 집어넣고, 구성요령이나 수사운영방식에 있어 수사권 산하에 있는 대검찰청 중양수사부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어긴 품수에 불과함.</li> <li>대검찰청 중양수사부 폐지. 2013.04.23. 공식 활동 종료.</li> <li>‘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3.11.29.에 시행됨. 직접수사기능이 없는 ‘반부패부’가 신설되고 산하에 ‘특별수사지휘과’, ‘특별수사지원과’ 설치.</li> </ul>
	(3)-2. 예외적으로 권한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1.6. 대검이 발표한 부패범죄수사단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한시적으로 전담하기함.</li> <li>검찰은 기존 방산비리 등 TF팀들이 가진 한계인 신속한 의결정구조, 수사력강화를 위해 대검중수부의 장점을 살리기에 부패범죄수사단을 신설했다고 밝힘. 이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맞지않는 한시적 수사팀임.</li> </ul>
	(3)-3.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구속영장 청구 심의가 가능하도록 2014년 법률 개정.</li> <li>공약에 없던 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설치.</li> </ul>
	(3)-4.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11~15명에서 40</li> </ul>

	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까지 증원.</li> <li>검찰시 민위원회에 '실전문가자문단을'을 설치</li> <li>치해 시민위원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수속위원회 결정은 구속 위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음.</li> <li>위원회 실질적 강화를 위한 법제화 논의 미비함. '검찰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법원 등에 관한 법률안(2013.06.05. 당 전해철 등 13인 제안)이 2016년 현류 재 법사위에 계류 중.</li> </ul>
(4)검·경 수사권 조정	(4)-1.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이 2016.1에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면서 검경수사권 독립을 주요 의제로 발표함.</li> <li>그러나 현재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된 것이 없음.</li> <li>2015년 조희팔 사건 등에서도 검경의 문제들은 계속 제기됨.</li> </ul>
	(4)-2.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혀 진행되지 않음.</li> </ul>
	(4)-3.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원칙적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혀 진행되지 않음.</li> </ul>
	(4)-4.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절'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혀 진행되지 않음.</li> </ul>
<b>합 계(19)</b>		<b>3</b>	<b>6</b>	<b>10</b>	

**(1) 이행률 (미이행 53%→후퇴이행 32%→완전이행 16%)**

- 검찰개혁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19개중 3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16%에 불과.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6개로 32%, 미이행 공약은 10개로 53%에 이룸.
- 특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과 수사권 조정 부분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음.

**(2) 평가**

-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이후, 대검찰청 산하에 반부패범죄수사단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됨. 대검 중수부의 형태, 규모, 인사 등과 유사하여 실질상 대검 중수부의 부활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음.

- 법조계, 시민단체, 경제계, 금융, IT분야, 언론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15년 1월 출범했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볼 수가 없었음.
- 검찰인사는 ‘정치검사’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는 코드인사 중심으로 운영. 검찰인사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사항임.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자료들을 받을 수 없었음. 적격심사위에 회부되었던 임은정 검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좌천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반복되어 검찰인사개혁이 요원한 것으로 보임.
- 일부 이행된 공약들도 대부분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약은 경찰에서는 미래계획으로 발표하지만 검찰은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임. 여전히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공약 이행 의지에 의문이 생김.

## 11. 외교통일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히 지키기	(1)-1.NLL에 대한 도발 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양국은 43-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NLL 일대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함.</li> <li>■ 또한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li> <li>■ 실제 2014년 5월 22일 북한의 초계함정에 대한 포격에 5발 맞대응을 하고, 2015년 6월 30일, 10월 24일 등 수차례의 북한 단속정 NLL 월경에 대한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등 NLL 도발에 대한 불용을 강조하고 있음.</li> </ul>
	(1)-2.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국가안보실)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1월 4차 북핵실험 정보력 부재, 2월 북핵 위기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발표 통일부에 떠넘기기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li> <li>■ 2013년 3월 23일 국가안보실이 발족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 김규현 제1차장, NSC 사무처장을 겸 / 주철기 제2차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직)</li> <li>■ 201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김관진 2대 국가안보실장이 역임 중.</li> </ul>
(2)북핵문제를 억지 타당으로 다룬다	(2)-1.큰 틀에서 해결 모색→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차원 또는 6자회담을 통한 큰 틀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없음.</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각화를 통해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 후보 시절의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구상, 2014년 제시한 남북+미중의 코리안 포플러 및 6자 회담을 위한 탐색적 대화 전략,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자회담 구상 등 수많은 동북아 협력을 위한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동북아 차원의 조율과 합의는 부재한 상태.</li> <li>특히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 참가, 10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에 관한 협의회에서 한중 정상 간 대화도 중국이 거부하는 등 이견 격차는 벌어지고 있음.</li> </ul>
	(2)-2.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는 4대 국방운영 중 하나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잡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음.</li> <li>특히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을 목표로 잡고 최근 사드 배치도 확정됨. 사드는 실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받고 있음.</li> <li>특히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예산 역시 군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96조원이 소요될 것을 추산하였으나 실제 국가예산계획은 군이 요구하는 재원보다 30조원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공약 실천의 담보가 의심스러움.</li> </ul>
	(2)-3.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p>의 및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중국 역시 세관 열 등을 강화하고, 900여개 품목에 달하는 WMD 관련 이종 용도 대북 금수 품·목록을 발표함.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국내이행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시행함 2013년도에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무기를 적재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행을 차단하고, 유럽 국가들로부터 마식령 스키 리프트 구매 시도를 무산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기존합의 준수를 위한 제재 중심의 국제사회와 공조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2016년 1월 북핵실험을 막지 못함.</li> </ul>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3)-1.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정부 임기 중 남북 대화는 상호 '격' 문제나 '대북전단 살포' 등 소모적 기싸움이 계속 됨.</li> <li>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5.24조치와 북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모든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어 있음.</li> <li>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상호 신뢰가 미진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상호보완적 발전 역시 미진하였음.</li> <li>2015년 8월 지뢰폭발사건 후 우리측의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장이 8.25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이후 합의에 대한 해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신뢰 구축 및 교류협력을 달성하지 못하고,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li> <li>8.25 합의 이후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 종교인 평화대회, 노동자 축구대회 사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양묘자재 지원도 이루어짐. 그러나 2015년 12월 차관급 남북회담 결렬, 4차 북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사회교류가 모두 차단됨.</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3)-2.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정신 실천 합의에 담긴 상호존중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채택되었던 10.4 선언 사실상 백지화되고, 2016년 8.25합의도 유명무실화됨.</li> <li>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이나 평화체제 전환 등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은 이행조차 안 됨.</li> <li>특히 2012년 국내적 정국에 의한 남북대화 촉공 개로 남북 신뢰 훼손</li> <li>상호 비방 중지에 합의했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남북 경색 국면 때마다 대북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재개</li> <li>남과 북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됨.</li> </ul>
	(3)-3.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준위 차원의 대화제와 북한이 신년사 등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강조함. 그러나 대화의 '격'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남북 대화는 모두 중단된 상태임. 따라서 대화채널의 상시 개설은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역시 여러 추측성 가능성만 제기될 뿐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임.</li> <li>2013년 8월 키리졸브 훈련 이후 남북 연락사무소 직통 전화, 관문점 연락통로가 폐쇄되는 등 대화중면은 지속적으로 악화중</li> <li>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북한도 남북-북-유엔사 통신 모두 차단한 상태임. 북한이 관문점 직통전화와 서해지구군 통신을 차단함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에는 공식적인 연락수단이 모두 단절된 상태가 됨. 유일한 공식 연락수단은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핸드마크' 뿐임.</li> </ul>
	(3)-4.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유엔 새천년개발계획 등 핵심사업인 영유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시한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 사업,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은 인도적 지원이 국</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취약계층 우선 지원, WHO·UNICEF·WFP 등 국제기구 적극 활용)				<p>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를 통해 2013년에는 지원없음, 2014년에는 700만 불을 지원했으나 2015년 200만 불로 축소</li> <li>▪ UNICEF를 통해 2013년 604만 불을 지원했으나 2014년에는 지원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400만 불을 지원</li> <li>▪ WHO를 통해 2013년 605만 불, 2014년 630만 불이 지원됨</li> <li>▪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된 총 액수는 2013년 1,209만 불, 2014년 1,330만 불임.</li> <li>▪ 그러나 2007년 4,397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인도적 대북지원은(민간지원 포함) 2008년부터 급감해 2013년 183억 원, 2014년 195억 원에 그침.</li> <li>▪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역시 2007년 335억 원이었던 반면, 2013년, 2014년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음.</li> <li>▪ 실제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비 규모는 총 7408억5400만 원이지만 이 중 집행된 금액은 173억74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시 됨.</li> </ul>
	(3)-5.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 확인, 영상 메시지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2.20일부터 22일까지 813명,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972명의 우리측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상봉. 2015년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나 생사확인을 정례화하려고 했으나 지속적 남북 관계 악화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li> <li>▪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매년 5천~6천명을 촬영해 3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연간 1천~2천 건으로 제작을 낮춰 잡음.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1만여 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으며, 당초 영상편지 신청자가 1만6천 800여 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령이라는 점에서</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p>영상편지 제작 공약 이행에 큰 차질로 판단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산가족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li> </ul>
	(3)-6.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4년부터 2015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 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며 그 가족은 430여 명에 이르지 만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송환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li> <li>국군포로 인도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프라이카우프' 제도는 구체적인 진행사항 없으며, 국방부는 북한 내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군포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없음.</li> <li>정부는 국군포로 한만택(2004년 12월 탈북, 2005년 1월 강제북송) 씨와 국군포로 이강산 씨의 일가족(2006년 8월 탈북, 2006년 10월 강제북송)이 강제 북송된 사건에 대해 부처 간 책임을 미루다 법원 판결에 의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옴.</li> <li>추가적으로 김련희(2011년 탈북) 씨와 같은 북한송환요구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li> </ul>
(4)작은 일에서작은 통시큰지 통시큰지	(4)-1.실질적 평화 기 초로 군사대결 완화, -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 통준위 공극적으로 정치적 의한 큰 통일 통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유엔 대북제재결 의안 채택 및 2014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둘러싼 성명전, 2015년 지뢰폭발사 건 등 실질적 평화와 군사 대결 완화는 난망</li> <li>경제공동체 건설 역시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6년 2월 개성공단 마저 전면중단 되 면서 남북경협이 원천적으로 차단됨.</li> <li>임기 중 나진-하산 프로 젝트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이를 경제공동체 건설로 보기는 어려움.</li> <li>통준위 차원의 광복 70년, 분단 70년 여러 사업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나 남북대화는 전혀</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진척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은 진척이 없음.
	(4)-2.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고 밝히고 통일준비위원회 통일현장에 이를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li> <li>▪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 기반이 붕괴되었고 실제 4차 핵실험과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됨. 이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음.</li> </ul>
	(4)-3.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 외교 지속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론 등의 선언적 내용을 제7차 세계정착회의(WPC) 기조연설, 제10차 ASEM 정상회의 제2세션 정상 발언문,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반복하고, 이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다보스 포럼 등 국제정상간의 여러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밝히며 남북관계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일본 아베 총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의 한반도 평화 통일 지지 발언을 이끌어냄.</li> </ul>
	(4)-4.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제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기조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의 정의란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과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라고 밝힌 바 있음.</li> <li>▪ 북한인권법은 2015년 1월 현재까지 여야 합의에 실패하여 국회 계류 중</li> <li>▪ 반면 북한 인권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UN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지난해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것에 비해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됨.</li> </ul>
(5) 동아시아	(5)-1. 동북아 역사 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아베 정권은 야스쿠</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p>등에 대해 국의 관점에 서 단호히 대처, 우리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p>				<p>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평화헌법 관련 문제와 관련된 해 등 극우화되며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으나 합의 해석 여부를 놓고 한일이 이견과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입도지원센터 관련 2014년 10월 조달청에 입찰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고 취소 사실을 숨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안전,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라며 해명했으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지역위원을 설득하고, 언론 등에 ‘보류’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미리 짜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짐.</li> <li>▪ 또한 2014년 12월 한·일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역사와 주권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임.</li> <li>▪ 한중관계는 2013년 11월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남단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 우리 군 작전구역(AO)도 지난 1월 동일하게 일치시킴.</li> <li>▪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은 한반도가 과거 중국 한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외국대학의 논문집 발간에 심사 절차도 밟지 않고 수역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음</li> </ul>
	<p>(5)-2.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 함께 협의(올바른 역사인식 정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14일 국립외교원에서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을 제시함.</li> <li>▪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위한 예산은 2014년 0원으로 배정함(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혼재된 관련 예산을 모두 합해도 7천 320만원으로 동북</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p>아역사재단의 사업비(103억 7천 400만원)의 0.7%, 전체 예산(191억 6천 100만원)의 0.4%에 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히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일본 시민단체, 언론과 중국 언론들에게 비판을 받는 등 역사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도 난망</li> </ul>
	(5)-3.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원자력 협정은 한미 정상회담시(13.5.7) 양국 정상간 조속한 협상 타결에 공감대 확인하고 외교 장관, 미국 측 주요인사 담 계기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필요성 적극 설 명함. 그러나 한미 양국 현재 협정의 개정과 관련해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 좁히지 못해 제6차 수석대표 협상(13.4.16.-18.)에서 현행 협정을 2년간 잠정 연기 장기로 하고, 협상의 적기 타결을 위해 3개월마다 협상기로 합의함.</li> <li>또한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결과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임 그러나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에 제공된 이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조차 안 됨.</li> <li>SOFA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경주한다고 밝히며 이태원 사건 미군 피의자 기소 전 신병인도(13.4.9.)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소(13.4.26.)를 근거로 들었음. 그러나 2014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주한미군 캠프워커 헌병대 소속 상병(23)이 지난 대구지법으로부터 일부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한 국검찰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는 불평등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li> <li>정부는 F-35 전투기 및 4대 핵심 기술 수입과 관련 특별허드마틴사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혼란을 겪다 핵심 기술 수입에 실패했으며,</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p>이는 일본의 F-35 수입 사례와 비교되며 미국과의 협력에도 미흡하다는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을 위해 정부는 중국 등 긍정적 AIIB에 가입하는 등 공식적 신호를 보내고, 대통령 국빈방중(13.6.27-30.)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 채택/중국 주요 지도자대급 인사 면담/중국 칭화대 연설/시안 방문 등을 진행함. 또한 포괄적 전략대화 구축을 통해 정치안보협력과 관계 발전 추진하기로 하고 인문유대 강화를 통한 외교부 간 신뢰증진을 위해 외교부장관-리샤오린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환영만찬(13.7.22.) /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발족(13.11.19., 서울) / 동북아 국장, 중국 인민일보에 '인문유대 강화' 관련 기고(14.1.30.) 등을 진행함.</li> <li>사드 문제는 중국과 한·미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으며, 4차 북핵실험 후 사드배치가 공식화되면서 중·러와 한·미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이 제기한 '중·미 책임론'과 '5자회담' 등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한미일-북중러의 구 냉전적 대결구도를 형성</li> <li>한미중 전략대화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없어 2013년 7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li> </ul>
	(5)-4.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신뢰구축과 협력, 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자연, 환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부터 협력을 시작해 북핵 등 군사 안보 현안으로 대화의 단계를 확장시켜가는 의미임.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은 아세안(ASEAN)+3 (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한 것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 등 45개국의 지지를 확보함.</li> <li>특히 2014년 10월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p>하면서 민간 합동의 1.5트랙 차원에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환경·재난구조 등이 집중 논의하는 등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이니셔티브 마련에 노력.</p> <p>▪ 그러나 일본의 극우화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남북관계 개선에 실패함으로써 자연, 환경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핵문제 대화안보 현안으로 확대하는 서울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음.</p> <p>▪ 실제 북한은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참여를 요청하는 우리 정부의 초청에 “반공화국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불참을 선언해 반쪽자리 회의가 됨.</p>
	(5)-5.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		○		<p>▪ 정부는 핵안보·군축 분야 유엔 등 국제무대 협력 강화를 위해 2014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및 참석</p> <p>▪ 박 대통령은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 축사에서 “핵안전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협력, 자금세탁 방지 등 연성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 라고 밝힘(동북아 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p> <p>▪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일명 서울프로세스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자연, 환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부터 협력을 시작해 북핵 등 군사 안보 현안으로 대화의 단계를 확장시켜가자는 의미임.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은 아세안(ASEAN)+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등 정상급 외교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 등 45개국의 지지를 확보함.</p> <p>▪ 특히 2014년 10월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하면서 민간 합동의 1.5트랙 차원에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환경·재난구조 등이 집중 논의하는 등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이니셔티브 마련에 노력.</p>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일본의 극우화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남북 관계 개선에 실패함으로써 적 분야에서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으로 확대하는 서울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음.</li> <li>▪ 특히 북한은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참여를 요청하는 우리 정부의 초청에 “반공화국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불참을 선언해 반쪽짜리 회의가 됨.</li> <li>▪ 4차 핵실험 이후 문제 해결에 관해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이 모색할 해법 자체에 대한 논의나 결론도 도출되지 않는 등 한국의 역할이 미비한 상태</li> </ul>
	(5)-6.아시아 외교지평 확대 및 협력의 도약대역할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 및 새로운 질서 창출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힘 이를 위해 「동북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심포지엄」 개최(14.3.5.)</li> <li>▪ 아시아 가스 가격 저감을 위한 동북아 5개국 협의 개최(14.3.23.)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대응 협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14.4.30.)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 개최(14.6.17.) 의 제별 협력사업 본격 추진 국제마약회의(IDEC)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간담회 개최(14.6.18.) 등이 진행됨</li> <li>▪ 또한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ASEAN 정상회의에 참석 비즈니스외교 등 아시아 외교 지평 확대와 협력의 도약대역할을 모색함</li> </ul>
(6)경제외교이드 성장발굴	(6)-1.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한국·호주, 5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함.</li> <li>▪ 아세안 정상회의서 ‘세일즈 외교’ G20 다자외교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세션의 선도발언 등 일자리 외교를 적극 추진함.</li> <li>▪ 그러나 세계경제위기의 모호한 공약 속에 효율적인 대처라고 보기에는 가시적이고 두드러진 성과를 찾기 어려움</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6년 1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9%나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li> <li>▪ 세계적 경제불황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국내경제에 미칠 여파 등 정부의 외교적 역량 등이 필요한 시점이나 중국 시장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어려움.</li> </ul>
	(6)-2. 신재생에너지 확보 위한 국제협력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양측은 연료·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가스관 부설,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양해각서 체결.</li> <li>▪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진출을 돕기 위한 '칠레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발간 등 국제협력 노력</li> <li>▪ 2014년 10월 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덴마크 총리인 토르딩 나스뎀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에서 공동연구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둠</li> <li>▪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2015년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녹색기후기금도 1억 달러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함</li> <li>▪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무 발전량을 할당받은 발전사들이 할당량 이행에 목표 달성 시점을 2020년 10%에서 2024년으로 늦추고 이행 연기 물량을 3년 범위에서 분할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개정안을 마련해 후퇴함</li> <li>▪ 또한 화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하는 모순을 보이고 제4차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은 3차에서 확정되었던 2030년 신·재생 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 11%를 2035년으로 늦추어 놓음</li> <li>▪ 신에너지, 부생가스, 산업폐기물을 재생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1.7%로</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p>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도 2011년 예산 1조35억 원에서 2014년도 예산은 85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 역시 14년 예산보다 10% 이상 감소한 7600억 원 수준으로 밝혀 정부 의지가 의심됨.</li> <li>▪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R&amp;D) 예산이 2011년 2500억 원에서 2014년 2300억 원, 2015년 예산안도 2200억 원 수준으로 2014년 대비 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지가 의심됨.</li> </ul>
	(6)-3.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미 정상회담시(13.5.7) 양국 정상간 조속한 협상 타결에 대한 공감대 확인하고, 제6차 수석대표 협상(13.4.16.-18.)에서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 연장기로 하고, 협상의 적기 타결을 위해 3개월마다 정례 협상기로 합의함.</li> <li>▪ 2015년 6월 15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새 한미원자력 협정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본 협정은 기존 협정에 비해 사후 핵연료 처리나 미국산 원자력 장비의 재수출 등 의 부분에서 있어 한국의 자율성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준이나 절차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한 이러한 자율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li> </ul>
	(6)-4. 일자리 외교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핵심 주제인 고용세션에서는 선출도 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안하기도 함.</li> <li>▪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창조경제'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함.</li> <li>▪ 2014년 21개국에 50명으</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p>로 K-Move 멘토를 구성하는 등 해외 취업·창업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청년 인턴과 개발 컨설턴트를 앞으로 4년 동안 3870명을 파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헝가리, 이스라엘, 포르투갈, 벨기에 등과 워킹홀리데이 협정(MOU) 체결. 구체적으로 2013년 상반기 총 27,216명의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해외 진출함(프랑스 제외)</li> <li>▪ 그러나 국감에서 호주 시드니 범죄피해 문제, 성매매 문제 등이 제시되며 양 늘리기에만 급급해 과정은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창조경제의 모호함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li> <li>▪ 박대통령은 2015년 제2의 중동붐을 강조하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중동으로 가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실적분석도 되지 않고 경제적 효과도 없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음.</li> </ul>
(7) ‘매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 외교 시대’ 개막	(7)-1.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세계 기여 위한 중견국 협력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국 협의체인 미타(MIKTA)의 장국으로 활동하면서(14.9월~15.8월) △고위급회의(SOM) 설치 △3차례 외교장관회의 개최와 미타 아카데미 네트워크, 국회의장회의 및 국방회의 출범, △공식 미타 웹사이트(www.mikta.org) 개설 및 미타 로고와 비전문서 채택,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성명 채택(에볼라/지속가능개발) 및 공동발언(양성평등/유엔5위위원회(행정·예산) 운영방식) 시행, △미타 회원국 간 교류협력사업(언론인/학생/주니어 외교관 등)을 진행</li> </ul>
	(7)-2.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계기로 국제평화에 앞장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2013~2014년) 종료</li> <li>▪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사회 내 활발한 활동 없음.</li> <li>▪ 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글로벌보건구상고위급회의 주최</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외 △에볼라 긴급 의료팀 파견 및 1760만 달러 (208억원) 상당 재정지원</li> <li>△시리아 난민 600여명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 2700만불 난민구호활동 제공</li> <li>△북한 4차 핵실험 계기로 국제군축 비확산체제 동참</li> <li>△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 만들었으나 국제사이버안보 공조 조약 미가입 상태</li> </ul>
	(7)-3.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년 ODA 규모는 약 2조 3,782억원으로(GNI대비 0.14%) 14년 0.13%에 비해 0.01% 상승했으나,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 기존목표였던 0.25%에서 0.2%로 목표 하향</li> <li>효율적·통합적 ODA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신설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ODA 사업조정(16년 1325개 사업 계획 중 부실 중복사업 등 134개 조정) 및 △유무상 사업간 실질적 연계 강화를 위한 17년 유무상연계사업 13건 발굴(15.11월) △중점협력국 재조정을 통해 기존 26개 국가 중 5개국 제외하고, 3개국 추가</li> <li>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형식상 정책 조정기구일뿐 실질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정책일관성, 협력대상국 시스템 활용,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서 개선이 없으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최빈국(동티모르)은 제외하고 고소득국(아제르바이잔, 페루)을 중점에 둠.</li> </ul>
	(7)-4.공공외교와 문화외교 적극 추진 및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외교 관련 예산 14년 90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액</li> <li>청년, 시니어 공공외교단,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운영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추진</li> <li>이 밖에 △한복외교사절단 △한지 알리기 활동 △외국인 참여형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인 한국의 맛 콘테스트 개최 △공공외교포럼 △글로벌 한국문화관광외교대사 등 해외,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 활동 지원</li> </ul>
	(7)-5.재외국민과 재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국민 지원과 관련하</li> </ul>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여 △재외공관 투표소 매 4만명 1개 투표소 추가 설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전 재외공관 확대 실시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확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외 전염병 정보로 민문자 공지 추진 △범죄 발생이 빈번한 필리핀 내 사건사고 처리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 결정
<b>합 계(30)</b>		<b>7</b>	<b>16</b>	<b>7</b>	

**(1) 이행률 (후퇴이행 53%→완전이행·미이행 23%)**

- 외교통일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30개중 7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 이행률 23%에 불과.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6개로 53%, 미이행 공약은 7개로 23%에 이룸

**(2) 평가**

- 박근혜 정부 3년,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경색국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2015년 8월 지뢰폭발 사건 이후 악화되던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해빙 무드에 들어설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는 확장기 재개, 뼈라 살포 등 냉전 시기의 갈등을 재현하고 있으며, 결국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에 이룸. 특히 사드 한반도 배치가 공식화되는 등 4차 핵실험 이후 미-중, 한-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이는 안보위주의 대북강경책이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지난 3년 간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억지력과 강제력을 기초한 안보위주의 대북강경책에 의존하여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여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함.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나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동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없었으며,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나 6자회담은 전혀 진척되지 못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 도출에 실패함. 북한인권 문제 역시 국내의 합리적 판단이나 철학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소모적 이념갈등·정쟁에 따라 국회에서 계류 중.
- 이산가족 상봉은 두 차례에 그치면서 상봉정례화나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편지 등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음.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가 대다수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인도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임. 또한 박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드레스덴 선언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누차 강조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가시적인 성과나 획기적인 수치증가는 없음.
-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통일대박을 강조했음에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DMZ세계평화공원이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 여러 대북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함. 특히 2015년 통일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밝힌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의 여러 대북사업들 역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또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고, 대북강경책에 의존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역내 현안에 외교적 선택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화가 노골화 되면서 독도영토주권 문제, 위안부 부정, 역사왜곡,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평화헌법 해석 변경 등의 망언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원론적인 문제 지적 수준에 그침. 실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체결해 일본과 간접적인 방향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는 등의 모순을 보임.
- 한미관계 역시 실제 조화롭고 협력적인 동맹인지 의문시 됨. 박근혜 정부는 해외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의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UN결의 외 국군의 해외파병을 확대시킨 것은 물론, 9600억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분담하면서도 어디에 쓰이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 조약을 체결함. SOFA 개정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음. 뿐만 아니라 안보분야 핵심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한 것은 자주국방 차원에 심각한 훼손이며 사드배치가 공론화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조짐이 보임.
-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공약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올해는 공공외교 지원, 재외국민 지원 분야에서 소기의 정책적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국제평화와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견국 협력체 믹타(MIKTA)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중견국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세부적으로 공공외교 분야(7-4)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 관련 예산을 약 40억원 증액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일회성 행사의 비중이 높고 투입 예산에 비해 국민 호응이 크지 않아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외국민 지원과 보호(7-5)와 관련해서는 재외국민의 민원 서비스 강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테러 및 자연재해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반면 작년을 끝으로 유엔이사국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평화에 앞장서기 위한(7-2) 국제사회 협의에는 참여했으나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특히 난민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없었음. 반면 개발협력 ODA(7-3)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 통합적 체제 운영은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2. 국방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1)-1.NLL 및 휴전선 도발 억제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리졸브 훈련,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한미동맹적 NLL도발 불용하고 관련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원을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li> <li>▪ 또한 한미 양국은 43-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NLL 일대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함. 아울러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li> <li>▪ 실제 2014년 5월 22일 북한의 초계함정에 대한 포격에 5발 맞대응을 하고, 2015년 6월 30일, 10월 24일 등 수차례의 북한 단속정 NLL 월경에 대한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등 NLL 도발에 대한 불용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다이 대북 화성기 방송을 후 재개함. 이는 2004년 중단 이후 11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휴전선 도발에도 불용을 강조하고 있음.</li> </ul>
(1)-2.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해군기지 전체 공정률은 2016년 1월 기준 98% 완성됐으며, 2월 안으로 준공식을 진행할 예정.</li> <li>▪ 그러나 공사를 반대하는 농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2015년 1월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충돌이 발생하는 등 강정마을회 등과 끊임없는 마찰이 있고, 활동가들은 완공 후에도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볼 수 없음.</li> <li>▪ 또한 2014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전액 통과했으나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조건부로 배정함.</li> </ul>
(1)-3.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 요구재원은 96조 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 원을 30조 원이나 초과함.</li> <li>▪ 무엇보다 방위력개선비 중점 투자 사업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점인 2023년까지 16조 5천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2014년 예산안에서 1조1천191억 원이 책정돼 국방부 요구예산 1조2천366억 원에 비해 1천175억 원 감액되었으며, 2015년 예산안은 해성성능 개량 사업이 일부 감액(-200억) 됨.</li> <li>▪ 또한 일각에서 킬 체인과 KAMD의 실효성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됨.</li> <li>▪ 최근 북핵위기에 따라 효용성에 의문이 있고 는 사드(THAAD) 배치를 공식화하여, 중·러의 반발을 불러옴.</li> </ul>

	(1)-4.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안정적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5조 7억 원, 15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37조6억 원, 1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39조 원으로 책정.</li> <li>▪ 그러나 정부 예산에서 정부재정비 대비 국방예산은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최근 국내총생산대비 2.4%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 비교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함.</li> <li>▪ 특히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서 무려 30조원 남게 정부예산계획과 군 추산이 차이가 나는 등 국방예산의 적정수준의 안정적 보장에 대한 이견이 큼</li> </ul>
	(1)-5.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중앙 및 지자체간 업무수행 체제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전 대응 능력은 제1차 한-미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개최하여 정보공유 및 사이버정책·전략·교리·인력·훈련 등 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를 중점 논의함. 또한 한-미는 CCWG 회의 지원을 위해 토의식 연습(TTX)을 진행함. 이 자리에서는 사이버 가상 공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이버 위기 대응 관련 취약점을 식별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li> <li>▪ 박정희 정부 시절 설립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 문을 닫았던 '국방정신전력원'이 2016.1.7.이 국방부 산하에 다시 신설됨.</li> <li>▪ 2014년 제47차 중앙통합방위 회의에서는 통합방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지자체·국방부·합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최근 군은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음. 그러나 연구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설립된다는 것 말고는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li> </ul>
(2)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2)-1.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 2014년 / 2015년 한미군사훈련 정상 진행 / 평화유지군 파병 연장 동의안 통과 및 예산 배정, 정상회담 진행 등을 통해 군사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함.</li> <li>▪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전격 서명함. 그러나 2016년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방협력이 깨지고 있음.</li> </ul>
	(2)-2.한·미연합 핵확장 억제능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01.06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li> </ul>



					<p>높아짐.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발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2014년 한미연합훈련에 첫 적용</li> <li>▪ 제45차 한·미안보협의 회(SCM)에서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과 WMD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승인함.</li> </ul>
	(2)-3.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 상호평가, 검증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23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li> <li>▪ 이로 인해 전작권 통제권 전환과정 자체가 사라짐에 따라 공약이 파기됨.</li> </ul>
(3) 혁신적 국방경영	(3)-1.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혁신의 지속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방위사업청의 일부 기능 국방부로 이관'을 정함. 13.08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킴.</li> <li>▪ 그러나 2014년 국감 결과 종합적인 통영합 납품비리 등 종합방산비리합수단 문제가 발생해 방산비리합수단 공식 출범하는 국방운영의 비효율적이고 부정부가 패가 만연해 결코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li> <li>▪ 2015년 창조국방의 개념을 정립함. 2016년 국방부 업무보고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방산비리 근절책은 1/4분기까지 발표를 목표로 함.</li> </ul>
	(3)-2.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22 민군협력진흥원 개원. 2013년 「민·군 기술협력 촉진법」 개정 이후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 부처가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참여.</li> <li>▪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li> <li>▪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공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이전(spin off)하는 등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li> <li>▪ 민간의 우수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을 확대</li> </ul>
	(3)-3.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

			<p>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방부와 각 군, 방사청 등 국방조직 전체에 대한 무기체계 전과정의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국방 분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역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소요-획득-운영에 이르는 단계 등 전순기에 걸친 기술 기획·품질경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품질기반을 강화한다는 부분연의 임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목표로 함.</li> <li>▪ 그러나 2014년 국감 결과 종합적인 통영합 납품비리 등 종합적인 방산비리 문제가 발생해 방산비리합수단 공식 출범하는 등 이로 인해 군과 방산인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떨어질 대로 떨어져 해외 수출 협상은 물론 국내 개발·투자까지도 꺼리고 있는 상황 발생함. 2016.2 국방신뢰성사업단이 발족되어 운영될 예정임.</li> <li>▪ 2016년 1월 21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공식 선언함. 2015년 미국 정부가 AESA 레이더라든가, 적외선 탐지장비 같은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것임. KF-X 개발사업은 개발비 8조 5000억원과 양산비용 9조 6000억원을 합해 18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역대급'사업임. 그러나 핵심기술 4가지의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이 돌연 기술이전을 약속했던 나머지 21개도 다시 수출승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나온 것인가 의문임.</li> </ul>
(3)-4.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개혁 및 정부 국정과제인 '비전투분야 민간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2009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 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음. 특히 국방부는 2013년 9월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해군정비창, 육군1보급단,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방통합정보관리소 등 4개 기관을 내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함.</li> <li>▪ 2015.11 군책임운영기관 보완과 활성화를 위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됨.</li> <li>▪ 국방부는 장비의 전투임무 집행을 위해 군수, 시설관리, 교육훈련 등 비전투분야의 민간 자원 활용</li> </ul>

					<p>확대를 골자로 한 ‘민간개방 기본계획(2015~19)’을 수립하여 군 당국이 향후 5년간 보급 업무나 복지·휴양시설 관리 등 전문무지원 분야 민간 위탁 비율을 높여 이 분야에서 복무하던 현역 장병 2500여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함.</p>
(4)보람있는 군복무	(4)-1.사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병 인상을 해 병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 단계를 지급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는 ‘2013년 병영문화선진화 종합평가회의’(13년12월27일)에서 희망준비금을 병사의 월급에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한다고 밝혀 대선 당시에는 ‘퇴직금’ 개념에서 적금 개념으로 바꿈. 이는 사실상 공약파기로 볼 수 있음.</li> <li>▪ 2013년 5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분석한 ‘2012년 국방예산 분석·평가’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평균 지출액은 ‘12만~14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사들은 이 중 68%가량을 외출·외박 여비, 간식·담배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li> <li>▪ 월급 만족도 역시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낀 병사가 전체의 80%의 달해 월급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li> <li>▪ 특히 “2017년까지 보급을 두 배로 인상하려면 매년 20%씩 인상해야만 하는데 내년도 인상이 15%에 불과함</li> <li>▪ 군인 월급은 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15% 인상하여 2016년에는 △이등병 148,800원 △일병 161,000원 △상병 178,100원 △병장 197,100원으로 인상되었음. 목표로 한 2배는 여전히 미비함.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1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li> </ul>
	(4)-2.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 복무기간만큼 직장 등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7월 개정된 제대군인법에 따르면 (위원장 안)은 통과되었으나 일반 사병은 포함되지 않은 장기 근무자에 한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lt;개정 2013.7.16.&gt; 고 개정됨</li> <li>▪ 또한 제대군인법 제16조(채용시 우대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lt;개정 2013.7.16.&gt; 로 개정됨.</li> </ul>
	(4)-3.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군에서 특기병으로 근무한 후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특기병제가 1300명으로 확대됨.</li> <li>▪ 군은 2017년까지 최소 15개</li> </ul>

				<p>과정의 국가기술 분야의 국가자격화를 통해 전역 후 미래설계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장병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 우선 2014년 신설되는 국가자격(안)은 무인항공정비사과 수중발파전문사, 항공유품질관리사 등이며 2013년에는 △전역 후 취업지원 3배 이상 확대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확대 △디지털 TV 3만대 보급 △체력단련기구 2000여 부대 보급 등 장병 자기개발에 기회 확대에 노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2013.7.16. 신설된 제대군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신설해 구체적인 과정이 진행됨.</li> <li>▪ 2014년 12월 병무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동안의 자기개발에 대해서는 학점 취득 2.4%, 상급학교 검정자격 취득 1.2%, 기술자격 및 면허 취득이 8.4%로 낮은 수치를 보여 자기개발에 실효적 문제를 보임</li> </ul>
	<p>(4)-4.장병의 민간 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현역병 진료실적현황 및 국방부 예탁금현황’에서 2013년 67만 5576건에서 2014년 86만 3574건으로 1년새 27.8%(18만7998건)나 늘었음. 2015.11까지 84만8455건이었음.</li> <li>▪ 그러나 전체 군의관 2천447명 중 장기 군의관은 106명으로 4.3%에 불과하며 임상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기 군의관이 대부분으로 국방 의료 체계의 문제임.</li> <li>▪ 그러나 병사들의 민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건강보험료는 되레 감소함. 건보 예탁금은 2013년 310억원/ 2014년 336억원 / 2015년 333억원</li> <li>▪ 장병들이 군 병원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진 서늘버스가 전방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되나 전반적으로 미진함. 또한 2013년 육군 장병이 한 달 동안 방치해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은 적도 있음.</li> <li>▪ 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 전문의 42명 가운데 38명이 군 최상위 의료기관인 수도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거점 군병원 외상 환자를 받을 여력조차 없음. 또한 수도병원에서 근무하는</li> </ul>

				<p>외상 전문의 가운데 총상이나 지뢰 사고 등 특수외상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는 1명, 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도 각각 1명에 불과한 실정임.</p>
	(4)-5.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		<p>■ 국방부는 2015년 1월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계류 중임.</p>
(5) 명예로운 보훈	(5)-1.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	<p>■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됨.</p> <p>■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제출 가능. 또한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서면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p> <p>■ 2014년 제대군인 중 58.7%(5544명)만이 재취업에 성공. 2013년 36.1%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나 2012년 58.1%, 2011년 64.4%, 2010년 64%, 2009년은 64.7%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실제 일자리 발굴이나 전직 지원의 실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반증.</p> <p>■ 또한 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재취업 제대군인 중 62.6%(1917명)이 비정규직인 점도 지적됨</p>
	(5)-2.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	<p>■ 2016년 예비군 차비는 1km당 116.14원으로 50km를 기준으로 하면 5807원으로 입·퇴소여비를 합하면 1만1614원임. 여기에 올해 1000원이 오른 예비군 훈련 보상비 7000원을 합하면 1만 8614원(부대 급식에 따른 식비 제외)임.</p> <p>■ 그러나 현역 군인의 5배에 육박하는 약 270만(2015.4 기준) 예비군의 실제 지출되는 교통비는 올해 국방부가 예비군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예비군들이 실제 지출한 교통비는 1만 3210원으로 조사됨.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은 농촌지역의 경우 예비군 교통비 지출이 1만5590원으로 조사됨.</p> <p>■ 따라서 현실적수준의 예비군 수당은 최소한 실비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나 현재 국방비가 지급</p>

					<p>하는 교통비는 실제 지출액에 절반도 되지 않음. 국방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안에 애초 예비군 훈련(일반훈련) 교통비 예산은 183억 원이었으나 기재부가 46억 원을 깎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 역시 문제로 보임</p>
	(5)-3.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12만원에서 2013년 15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에 이어 2014년에도 2만원 증액된 17만원임.</li> <li>▪ 여러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이 인상 및 복지서비스 확대</li> <li>▪ 2016년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2만원씩 인상돼 각각 20만원과 26만~28만원이 지급됨</li> <li>▪ 또 서훈이 누락된 6·25 참전용사를 발굴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중구,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의 국외 독립운동사료 발굴도 확대할 방침.</li> <li>▪ 복지지원은 보훈병원 병상이 현재 800개에서 2018년까지 1,400개로 확충되고, 고령 유공자를 위해 경기 남양주에 보훈요양원도 설립 예정.</li> </ul>
	(5)-4.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며 그 가족은 430여 명에 이르지만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감시 강화 등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음.</li> <li>▪ 국군포로 인도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프라이카우프’제도의 구체적 진행은 없음.</li> <li>▪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에 전문탐사관 4명, 감식관 1명, 2014년에는 조사담당관 1명 등 조사·감식분야의 전문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전신 X-ray 등 3종의 감식장비도 추가로 도입하였음.</li> <li>▪ 그 결과 2014년 9월까지 총 9,354구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28,502명의 유가족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하였음. 전사자 신원도 91위를 추가로 확인하였음.</li> <li>▪ 그러나 남북이 2007년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진전된 바 없음.</li> </ul>
	합 계(21)	6	12	3	

(1) 이행률 (후퇴이행 57%→완전이행 29%→미이행 14%)

- 작년에 비해 후퇴함.
- 국방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1개중 6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 이행률 29%임.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2개로 57%이며, 미이행 공약은 3개로 14%임.

## (2) 평가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러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상황은 더욱 엄중해짐.
- 국방분야 공약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 도발 불용, 우리 군의 정신강화 등 안보위주의 강경대북정책을 반영한 듯 실제 미이행 공약이 단 3개(10%)에 불과함. 그러나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공약의 경우 북핵 4차 핵실험으로 2년 평가와 다르게 미이행으로 분류됨.
- 무엇보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소화기부터 통영함까지 국방분야의 각종 부정부패, 방산비리가 국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점은 심각한 문제임. 비리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방혁신, 민간참여 확대, 효율적 체제 개선 등의 공약에 실효적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음.
- 2015년 미국 정부가 AESA 레이더라든가, 적외선 탐지장비 같은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KF-X 개발사업도 미국이 돌연 기술이전을 약속했던 나머지 21개도 다시 수출승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나오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임.
-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 공약은 매년 20%의 인상이 필요하나 15%에 머물고, 국군포로의 인도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기로한 '프라이카우프' 제도의 구체적 진행도 없음.
- 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 전문의 42명 가운데 38명이 군 최상위 의료기관인 수도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거점 군병원은 외상 환자를 받을 여력조차 없음. 특히 수도병원에서 근무하는 외상 전문의 가운데 총상이나 지뢰 사고 등 특수외상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는 1명, 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도 각각 1명에 불과함.
- 전작권 전환 연기는 자주국방의 심각한 훼손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국가 간 약속을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나 미룬 것은 심각한 문제임,

## 13. 편안한 삶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 이행	후퇴 이행		
(1)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1)-1.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 기준선 : (4인가구 기준) 297만원 → 48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사항 없음
	(1)-2.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대도시기준) 1억3300

	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 확대				만원 → 2억2800만원) 일부 개선
	(1)-3. 주거용 재산 공제 확대,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 통합 조정방안 마련		○		-부양의무자의 본인주거용 월세보증금 20만원 이내 공제(14년) -금융재산공제(생활준비금공제: 14년 300만원 → 15년 500만원) 일부 개선
(2)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2)-1.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			15.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3조 개정
	(2)-2. 상대빈곤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			2014. 12. 9 기초생활 보장법 국회 통과
(3)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3)-1.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2014. 12. 9 기초생활 보장법 국회 통과
	(3)-2.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2014. 12. 9 기초생활 보장법 국회 통과
(4)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체계 구축	(4)-1.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가능
	(4)-2.차상위계층과 연계 총소득기준 상향			○	내용 없음
	(4)-3.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맞벌이기준 1,000만원 21%로 상향조정 시행
	(4)-4.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		부채 미반영. 재산기준을 1억에서 1억4천으로 증액
(5)복지일자리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5)-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도입,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		-3교대 근무 도입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권고안 지자체 발송. -7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인력 6,000명 확충 결정(14.5.)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177명 확충('14.7.)
	(5)-2.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급여수준 체계화 및 초유개선지원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공



	(5)-3.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	○			사회복무요원비를 확대 (13)→38% (14)→42% 17년까지 확대 계획
(6)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1.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급여+비급여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비급여 포함 전액 지원은 미이행(3대 비급여 제외)
(7)저소득층의 환자와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7)-1.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기존 3단계 등급구분에서 7단계로 후퇴 시행
	(7)-2.제도 도입 시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		○		혜택수혜자 15만명 축소 시행
(8)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8)-1.실업자,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 연장	○			13년 9월 시행령 개정 공포
(9)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9)-1.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 대상자,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	○			16.7월부터 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70세→65세)
(10)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10)-1.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접수화, 접수비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11)신체장애 치매환자에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11)-1.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대상자에 우선 편입	○			2014.7. 치매특별등급(5등급) 시행
(12)신체장애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12)-1.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서비스 제도화			○	내용 없음
(13)기초연금 도입	(13)-1.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			기초연금법 시행
	(13)-2.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		○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축소.
(14)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14)-1.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14)-2. 노인에게 사회공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개발, 보급(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14년) 310천개 - 지자체경상보조 사회공헌형 : 248천개 (연중일자리 25천개 포함(80%))
	(14)-3.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합계	27	14	11	2	

**(1) 이행률 (완전이행 52%→후퇴이행 41%→미이행 7%)**

- 복지공약인 편안한 삶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세부공약 27개중 14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52%로 나타남. 후퇴이행된 공약은 11개로 41%. 미이행 공약은 2개로 7%임.
- 지난해 이행률이 낮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으나 공약으로 제시했던 세부 기준 개선은 미흡해 후퇴이행으로 나타남.
- 지난해 26%였던 미이행률이 7%로 개선됨

**(2) 평가**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복지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편안한 삶’은 완전이행률이 52%로 나타남.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행률이 향상됨.
-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축소 후퇴되어 시행됨. 기초연금은 65세 전체 노인 20만원 지급에서 노인 70%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되었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3대 비급여의 일부 개선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음.

**14. 장애인**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1)-1.법 개정. 장애인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	관련법안 미발의
	(1)-2.장애인 등급제 개선		○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추진(‘16년 하) → 최종 모형 확정 및 시행 준비(‘17년 상)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2)-1.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14) 장애 1~2급 → (‘15) 장애 1~3급 활동보조단가 인상 (8,810→9,000원)
	(2)-2.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			장애인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법률명시(아이돌봄지원법)

(3) 「발달장애 인법」 제정	(3)-1.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2014년 5월 20일 제정 2015년 11월 21일 시행
	(3)-2.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법 제정
	(3)-3.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			발달장애인법 제정
(4)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농교육환경개선	(4)-1.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4)-2.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5) 장애인 연금의 급여인상, 대상확대	(5)-1.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			장애인연금법 개정
	(5)-2.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			장애인연금법 개정
	(5)-3. 부가급여 현실화		○		13년 2만원 인상 17년 3만원 인상 계획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6)-1.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운영규모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기준에 미치지 못함.
	(6)-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용 제도정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 일부 개정
	(6)-3.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국가정보화기본법 통과
(7)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7)-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2.5%→3% 일반기업: 2.5%→2.7%)
	(7)-2.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			장애인고용상황보고 장애인고용 불성실기관 공개
(8)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8)-1.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교원 증원	○			학교·학급·교원수 증가(2013 특수교육통계)
	(8)-2.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특수교육 교사	○			2012년 359개 → 2013년 402개로

	양성				증가
	(8)-3.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 전환		○		의무운영이 아닌 신청운영, 확대중
(9)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9)-1.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보급자리주택 공급
	(9)-2.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	계획없음
(10)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10)-1.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	○			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 예산 증액 (608억원-->652억원)
	(10)-2.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		재활병원은 기존병원을 보완운영, 거점보건소는 12년도 60개소에서 13년도 87개소, 14년도 113개소, 15년도 142개소, 16년도 171개소 확충 계획
	(10)-3.장애인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적용·실시	○			수급자 가구원.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선정
	(10)-4.장애인 정신보건 사업 지원			○	장애인 정신보건 별도사업없음
<b>합계</b>	<b>26</b>	<b>17</b>	<b>6</b>	<b>3</b>	

(1) 이행률 (완전이행 65%→후퇴이행 23%→미이행 12%)

- 장애인 공약 이행률은 세부공약 26개 중 17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65%로 나타남.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6개로 23%. 미이행 공약은 3개 12%임.
- <장애인지원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연금 지급관련 법 개정됨.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되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권리확대를 위한 법은 제정되지 않아 미이행.
- 지난해 24%였던 미이행률이 12%로 낮아짐

(2) 평가

- 장애인 등 취약층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 영역의 완전이행률은 65%. 일자리대책 영역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되어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그러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개정은 이행되지 않음.

15. 행복교육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인성교육 우선 강화	(1)-1.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		○		- 교재 및 자료 제작과 보급 완료('16년 1월 말) - 현장 적용 워크숍(2차례) 실시
	(1)-2.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 참여 수업 전환		○		- 현장교사 연수, 홈페이지를 개설, 인성의 평가 모형 개발('15년 9월~12월).
(2)꿈과 끼를 살려주는 정 교육과 운영	(2)-1. '자유학기제' 운영	○			2016년 입학생 의무시행
	(2)-2.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			예산배정
(3)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3)-1.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			핵심성취기준교과서 개발
	(3)-2.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예산확대 없음
	(3)-3. 태블릿 PC나 스마트폰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			농어촌 도입, 디지털교과서 일부 시범 적용, 확대에 문제 있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4)초등학교 를 온종일 돌봄 학교로 운영	(4)-1.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참여비 및 인건비 무료, 간식비나 석식비(저소득층은 무료) 수익자 부담.
	(4)-2.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돌봄 교실' 연장 운영		○		1,2학년 학생으로 대상 제한
	(4)-3.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 방과후 돌봄확대 운영계획> 지역돌봄운영협의회 구축, 공립형-중고생시설 확대는 미흡
(5)학교체육 활성화	(5)-1.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신규 배치	○			'13, 3,940명 -->'14, 4,736명 확대
	(5)-2.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	○			스포츠강사를 체육교사로 전환 추진
(6)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6)-1.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 향후 중·장기 세입전망,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 검토중
(7)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7)-1.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상담교사 확충
	(7)-2.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	○			진로교육법 시행(15.12)

	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7)-3.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무료 제공	○			개인맞춤형 진단코칭시범사업실시
(8)사교육비경감정책추진	(8)-1.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국회 본회의 통과 (14.02.20)
	(8)-2.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방과 후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원칙 유지.
	(8)-3.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계획수립/집행
	(8)-4.수능과 논술 시험출제를 교과서 중심으로 제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계획수립/집행
	(8)-5.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영주요 교과와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			법개정 불필요 예산배정
(9)교원업무경감	(9)-1.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외의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철회됨.
	(9)-2.담임교사 업무 중 행정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이관하여, 교사가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6개 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별로 진행. 교육부 별도 지원 없음
	(9)-3.‘학교 교육통계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여 매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조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계류중, 교육정보통계관리 규정 훈령개정
	(9)-4.교사의 업무부담 감축을 위하여 에듀과인 활용 시스템을 개선				판단 불능
(10)교원평가제도 개선	(10)-1.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지표와 다른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무성적평가·성과급평가 교원평가로 일원화			○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2개로 통합

	(10)-2.수업지도와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지표를 수업능력 과 학생지도실적 중심으로 전환	○			평가지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선 생활지도 영역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10)-3.교장·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연구과제 진행중
(11)신규 교원수 채용 교시 대수경감	(11)-1.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621명 증원 계획(대통령령 개정 및 예산협의) 2월 말 확정.
	(11)-2.내실 있는 수업 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	관련계획 없음
	(11)-3.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621명 증원 계획(대통령령 개정 및 예산협의) 2월 말 확정.
(12)학교 폭력 및 학생 위협 제로화 (Zero)환경 조성	(12)-1.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			법개정 불필요 예산반영
	(12)-2.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예산반영
	(12)-3.Week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 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예산반영
	(12)-4.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예산반영
(13)한국형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13)-1.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운영	○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 예산반영
	(13)-2.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고등교육법 개정, 입학전형료 결정 기준 교육부령 공포
	(13)-3.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내 대입합격자 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대입 지원 상담기회 제공	○			2016년 정시부터 전면 적용예정
(14)대학입	(14)-1.수시는 학생부	○			사교육경감 8-3 중복

시 간소화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내용 계획수립/집행
	(14)-2.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			계획수립/집행
(1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15)-1.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		국가장학금지원확대(16년) 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5~8분위는 작년과 동일
	(15)-2.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소득8분위까지 확대
	(15)-3.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체제 기틀 마련		○		반값 달성 미흡
(16) 학자금 대출 이자율 실질적 제로화 추진	(16)-1.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불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2.9% 이자율 인하
	(16)-2.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3.05.12)
(17) 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17)-1.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		대학 지원 재정 확충했으나 1%에 못미침.
	(17)-2.글로벌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3.12)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신설,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확대
(18)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18)-1.'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지방대학 및 균형인재육성법 국회 통과
	(18)-2.지역거점대학 육	○			법개정 불필요



	성사업,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사업, 지방대장학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예산 반영
	(18)-3.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특성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		산학협력(링크사업단), 면담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나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19)지역 대학채용도 확대 출신당으기 취업회	(19)-1.신규채용자의 일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등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지방대 육성방안 계획 발표(13.11.4)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 계획
	(19)-2.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상향조정	○			지방대 육성방안 계획 발표
	(19)-3.주요 기업 및 중심채용 및 지역대학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	○			직무능력채용 공기업 우선 적용
	(19)-4.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19)-5.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창업클러스터(K Valley) 집중 육성				<b>판단불능 자료 파악 불가(미반영)</b>
(20)대학 기숙사비 인하	(20)-1.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예산 반영
	(20)-2.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용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로 확대		○		15년 기숙사 신규 확충 규모 : 16,856명(수용률: 23.8%)
	(20)-3.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를 20~30%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용자 지원		○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를 월 24만원 이하(2인실 1인당 기준)로 유지 사립대 기숙사비 인하 유도방안 미흡

(21) 국가 직무능력표준 구축	(21)-1.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예산 반영
	(21)-2.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전문대학을 확대('15. 79교 → '16. 90교)
	(21)-3.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14.02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안 환노위 통과
	(21)-4.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이수 및 직무경력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계 구축	○			계획수립(실무형 비학위·학위 통합과정 운영)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체계 마련
(22)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	(22)-1.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			국가역량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직무능력평가제 개발 및 적용
	(22)-2.공공기관 우선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			계획수립 (공공)사례 발굴. 확산 계획 (민간)평가모델 개발 보급
(23) 고졸 취업교육 강화	(23)-1.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			법개정 불필요 예산 반영
	(23)-2.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8차 특수분야 전문인재양성 학교 지정. 14년 9,10차 예정
	(23)-3.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			산업계 주도로 시범사업 계획 마련 운영
	(23)-4.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			일반고 특화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공모
(24) 전문대 등 고졸 취업기업을 위한 집중 육성	(24)-1.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		- 78개교 대상 선정
	(24)-2.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	고등교육법 국회 교문위에서 논의 중
	(24)-3.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	교육부 입법 포기(330회 1차 법안소위 2014.12.17.) 회의록. 교육부 차관 발언. ->도제교육(시범사업 중)으로 전환.
	(24)-4.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육성	○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8개교 선정
	(24)-5.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			총 20개 사업단 3천명 지원 예정

(25)스마트 기반 국가 평생 학습 체 구축	(25)-1.지역 평생학습 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 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			기본계획수립(온라인 평생 학습 종합서비스망 제 공)
	(25)-2.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 립	○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 반영
	(25)-3.인생 후반기 고 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 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			
	(25)-4.어르신 사이버세 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 플리케이션(app) 보급	○			
합계	77	49	16	10	*판단불능 2개

**(1) 이행률 (완전이행 64%→후퇴이행 21%→미이행 13%)**

- 교육공약인 행복교육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세부공약 77개중 판단불능 2개를 제외  
한 49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64%로 높게 나타남.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6개  
(21%). 미이행 공약은 10개(13%)임.
- 영역별 이행률이 낮은 ‘교원업무경감’, ‘교원 확대’ 등은 미이행으로 나타남. ‘고교무상교  
육’은 올해도 예산 배정되지 못함. ‘반값 등록금’은 예산배정 축소로 후퇴됨. ‘사교육경감’  
과 ‘학교폭력대책’과 ‘체육교사 확충’은 관련 법령 개정 및 관련 예산배정되어 상대적으로  
이행률 높음.
- 지난해 18%였던 미이행률이 13%로 낮아짐.

**(2) 평가**

- 교육공약은 다른 분야보다 이행률이 높게 나타남.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새롭고 혁  
신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계획의 연속추진 성격의 공약이 대부분임.
-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여전히 추진이 불투  
명함. 반값등록금은 예산배정이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분야 공약은 후퇴됨.
- 직무능력중심 교육과 평가 제도 도입은 이루어짐.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단계적  
확대 추진되고 있음.

**16. 행복한 여성**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 이행	후퇴이 행		
(1)미래여성인 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1)-1.여성 장관 및 정부 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 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 대하고 요직에 배치하여 여성 대표성 확대·강화		○		여성위원 2014 년 31.7%에서 2015년 34.1% 로 확대

	(1)-2.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 지표 반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	○			2배 확대 목표 설정, 기관평가 시 반영
	(1)-3.여성 교수 및 여성 교장 채용쿼터제 도입으로 교육부문의 여성 교수와 여성 교장비율 확대	○			여성교장교감 채용목표제 도입, <국립대학양성평등추진사업>을 통해 여교수 확대추진
	(1)-4.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함양 과정 개설 및 여성인재 컨설턴트 육성사업 전담	○			계획수립/집행
	(1)-5.정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하여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	○			여성인재 DB구축 추진 중
(2) 경력 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2)-1.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	○			올해부터 예산반영, 프로그램 개발 중
	(2)-2.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폴리텍, 새일자리센터 연계하여 진행 중
	(2)-3.‘새로일하기센터’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2013년 20개소 증가
	(2)-4.‘새로일하기센터’내 창업지원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맞춤형 창업 지원	○			2014년 10개소 시범운영 확대
(3)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3)-1.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안을 제공		○		서비스표준화 지침 보급 중, 시범적용(시급을 기본급화)
	(3)-2.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와 고용형태 및 임금·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템구축	○			사회복지시설담당 공무원용 홈페이지 운영 중
(4)여성의 고용확대	(4)-1.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 미달 범위 확대를	○			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개정,

	<p>통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p>				여성 고용비율 산업별 평균60% → 70%충족으로 확대
	(4)-2.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4)-3.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16년말 최초공표
(5)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확대	(5)-1.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시범사업실시 예산 50억원편성
	(5)-2.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			지원 예산 확대 13년 141억 -->14년 181억원
	(5)-3.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난임부부 지원 예산 확대
	(5)-4.고위험 임신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			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 3개소 확대
	(5)-5.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내용없음
	(5)-6.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			2013년 시행
(6)고위험 임신부 지원강화	(6)-1.고위험 임신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			복지부 예산 41.4억원 편성
	(6)-2.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신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신규 50병상 확충 및 운영비 지원, 통합치료센터 3개소 설치,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체계적 관리에는 미흡
	(6)-3.고위험 임신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운영			○	(6)-2와 동일내용
(7)임신·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7)-1.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			전 정부계획, 현재 25개소 지원중
	(7)-2.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			헬기착륙장건설 외래산부인과 8개소 신설 등 예산 반영
	(7)-3.산부인과의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	○			7-1과 동일사업

	설				
(8) 임신 기간 단축 근로시간 제도 도입	(8)-1.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			근로기준법 금지 조항 신설
	(8)-2.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8)-3.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			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16년 3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 적용
(9) '아빠의 달' 도입을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9)-1.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			14. 9. 시행령 개정
	(9)-2. 30일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했으나, 상한액 설정으로 금액 축소
(10)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10)-1.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			올해부터 적용. 내년부터 환급액 수령 가능
	(10)-2.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적용	○			올해부터 적용. 내년부터 환급액 수령 가능
(11) 셋째 아이 전액 지원 대학등록금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11)-1.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나이 및 소득제한 적용. 축소
	(11)-2.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12)-1.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150개 신설
	(12)-2.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2013년 700개소 추가 지정 및 17년까지 매년 200개소 추가 지정 계획
	(12)-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			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12)-4. 보육교사 처우 실		○		실태조사 3년주

	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 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 실시. 처우 개선비 인상. 인건비 실태를 평가인증에 반영
(13) 부모 선택된 권이 보장되는 맞춤형 보육서 비스 제공	(13)-1. 획일적인 아이돌 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 형(기본형+ 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 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로 다양화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13)-2.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 세)로 확대되 취업모(맞 벌이포함), 다자녀, 장애 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 등 지원	○			영아종일제 대상 이 0~2세로 확 대
	(13)-3. 국공립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 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 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 비스 제공			○	16년 380개로 시간제보육반 확 대
	(13)-4.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 견 사업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 서비스 제공	○			기관파견 종일돌 봄. 시간제 돌봄 시행. 예산배정
(14) 여성 출산 휴가와 육아휴 직 확대	(14)-1.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 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 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만 8세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육아 휴직 사용으로 대상연령 축소
	(14)-2.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 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 대	○			2014. 10. 여 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 안 시행
(15) 다문화가 족의 적응지원 강화	(15)-1. 입국초기 최초 1 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 서비스(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 업) 실시	○			소득과 기간 고 려한 교육지원
	(15)-2. 입국 5년이상 결 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 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 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 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 링사업 실시	○			실시예산확보 (1 억 2천 900만원 5,6월 실시계획)
	(15)-3. 초기입국 결혼이 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 법 통과

	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16)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16)-1.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			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형) 22세대 공급
	(16)-2.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기재부와 재정문제 논의 중
	(16)-3.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확대		○		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10만원) 지급
	(16)-4.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
(17)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17)-1.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전 계층 지원 확대
	(17)-2.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	인상없음
	(17)-3.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내용없음
	(17)-4.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개정. 평가인증 확대
<b>합 계</b>	<b>56</b>	<b>42</b>	<b>10</b>	<b>4</b>	

**(1) 이행률 (완전이행 75%→후퇴이행 18%→미이행 7%)**

- 여성공약인 행복한여성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세부공약 56개중 42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75%임.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0개(18%). 미이행 공약은 4개(7%)로 나타남.
- 지난해와 변동 사항 없음

**(2) 평가**

-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하는 ‘행복한 여성’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행률은 지난해와 변동사항 없음.



- 무상보육 확대 등은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배정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김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며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교육공약은 전 정부의 계획을 연장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 17. 행복주거

공약 영역	세부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하우스푸어대책	(1)-1.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		·'부실채권매입 지분매각 제도'를 운영했지만 시행 1년 만에 폐지
	(1)-2.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		·사전가입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시행했지만, 실적은 644건(인출액 763억)에 불과. 당초 사전가입제도는 1년간 한시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적어 신규 취급을 중단 ·2016년 업무보고에서 내 집연금 3종 세트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전가입제도와는 다른 제도임
	(1)-3.행복주택 프로젝트		○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 기존 20만호에서 후퇴되어 시행중임. ·공급(사업승인) 현황 : '14년 2.6만호 → '15년, 3.8만호 → '16년, 3.8만호 → '17년 3.8만호 ·입주자 모집 현황 : '15년 847호(서울 4곳) → '16년 10,824호(전국 23곳)
(2) 렌트푸어 대책	(2)-1.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목돈 안드는 전세 I 은 폐지 ·목돈 II 는 실적부진으로 세제 지원을 통해 운영중이긴 하나 지난해 말로 세제지원도 폐지됨.

(2)-2.보편적 주거 복지 - 임대주택 공급	○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5만호 등 총 1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해 '17년까지 총 52.7만호 공급. ·이 중, 매입·전세임대 4.5만호(매입 1.4만, 전세 3.1만)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에 60% 이상)을 중심으로 신속(조기 입주자모집)하게 공급
(2)-3.보편적 주거 복지 - 전월세자금 융자	○			·2015년 243명 16억 실적. 목표는 최대 7000명 500억원이었음.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16년 업무보고)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취급은행 : 우리은행 1곳 → 기금취급은행 6곳
(2)-4.보편적 주거 복지 -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 ·현재 80만 가구 월 10.8만원 지급 중. 올해 5천원 인산 예정.
(2)-5.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난방용 유류 부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2014.01.0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 ·2015년 세법개정안 : 영구임대주택 유류세 부가세 2018년 말까지 연장
(2)-6.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검토		○		·'주거복지사' 제도 도입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정착 지원 계획 중 ·새로도입 할 계획인 공공실버

					주택의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등을 만들고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상주하도록 함
합 계(9)		4	5	0	

(1) 이행률 (후퇴이행 56%→완전이행 44%)

- 행복주거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9개 중 4개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44%.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로 56%의 이행률을 보임.

(2) 평가

- 주택관련 공약은 후퇴이행을 포함할 경우 전체적으로 이행률이 높으나, 제도시행 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제도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많음.
-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공약의 적절성 자체가 문제였던 공약마저도 제도가 폐지 됨.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일명 뉴스테이), 취업준비생 월세자금 융자 등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 또한 국민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평가됨.
- 결국 행복주거 공약은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이행률로만 판단하기 어려움.

18. 지속가능국가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1)-1.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인 80%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013년 67.6%, 2014년 71.4%, 2015년 73.1% 달성함. 2016년은 76%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17년까지 80% 목표 달성할 예정 ·<축산분뇨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2013년 1개소(경남 양산), 2015년 1개소(강원 홍천) 준공 완료했고, 2017년까지 9개소(강원 철원, 평창,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충남 서산, 제주, 금산, 경남 밀양, 충북 음성) 계획

				하고, 추진 중
(1)-2.오염지천, 복개하천 생태하천 복원		○		·2013년 104.1km, 2014년 115.6km, 2015년 100.9km 달성함. ·2014년 162개소, 2015년 141개소 추진했고, 2016년 120개소 추진 예정
(1)-3.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버스 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기차량의 탱크로리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 대기의 질 개선		○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15.12.31.), 시행규칙 개정(2015.10.20) ·전기차 보급: 2013년 780대, 2014년 1,075대, 2015년 2,821대 (총 4,676대) 보급 완료, 2016년 8,000대 보급 예정 ·공공 급속충전시설: 2013년 59대, 2014년 60대, 2015년 100대 설치 완료했고, 2016년 150대 설치 예정 ·천연가스버스: 2013년 2686대, 2014년 1884대, 2015년 2105대 보급 완료(민간보급까지 포함)했고, 2016년은 545대 보급 예정 ·개방식 쓰레기차량 탱크로리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4.12.31)
(1)-4.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도응 수질개선 대책 강화		○		·2013.12.19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13개 분야 30개 과제(예보·예측 기능강화, 적조대응 R&D 강화, 양식어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관리 강화, 적조 관련 제도개선) 시행중
(1)-5.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시 최상기술을 적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환경오염처리시설의 허가기준 개편		○		·7개 법률로 분산·중복된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개로 일원화함 ·2015년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1)-6.실효성 있게 환경규제 정비				·모호, 판단 불능
(2)환경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2)-1.장외영향평가제 도입 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15.1.1.)
	(2)-2.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비 대폭인상 (30%→70%)	○			·2012년 철거지원비의 30% (최대 국고 60만원)에서 2013년 40%(96만원), 2014년 60%(144만원), 2015년 70%(168만원) 확대함
	(2)-3.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모호, 판단불능
	(2)-4.환경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치		○		·환경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 (SOP) 수립 완료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5.1.1. 시행)해서 완료함 ·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는 4곳(경기 수원, 전남 모성군, 전북 진안, 강원 동해) 설치 완료했고, 4곳(경남 함양, 충남 공주, 경기 가평군, 제주) 설치중이고 2017년 말 완료 예정
(3)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제도 구축	(3)-1.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2014.12.31.)
	(3)-2.환경분쟁조정 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효적 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 (2015.12.22.) 해서 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구제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제도 개선 ·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교통소음 피해, 먼지 피해, 악취 피해, 건물 피해, 일조조망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정 (2015.10.29.)했고,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용역, 새로 실시할 용역들 고려해 2016년 11월, 12월 정도 산정 기준 개정할 예정
	(3)-3.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2014.12.31.),	
(4)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4)-1.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상습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구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반영해서 개정(2013.7.16.)	
	(4)-2.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 도시계획 재정비		○		·재해취약성 분석과 재해예방책 도시계획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서 10개 지자체 선정함. 2016년은 예산과 계획 없음 ·선정한 10개 지자체: 철원, 합천, 부산, 울산, 논산, 광양, 해남, 가평, 음성, 양구	
	(4)-3.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정비하여 방재 인프라 전면구축,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5호 방재지구 지정을 2013년 추가하면서 방재지구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까지 총 13개 방재지구 지정함. 추후 확대할 예정 ·방재지구 지정: 서울 5개(성동1, 노원1, 구로3)/전남 4개(목포4)/경남 4개(산청군 4개)
	(4)-4.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1.6.) 제20조, 제27조 ·시행령은 2015년 7월 개정했고, 하위법령인 지침은 검토중. 빠르면 올 상반기 정도 개정할 예정
(5)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5)-1.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 예산 확보			○		·2017년까지 도시 내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20개 조성을 목표로 2012년 3개소, 2013년 2개소, 2014년 3개소, 2015년 4개소(총 12개소) 선정했고, 2016년 2개소 선정할 예정 ·완공된 곳은 2015년 기준 4개소(부산, 대구, 서울, 익산)
	(5)-2.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			○		·‘생활권 마을림’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생활권

	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로 조성, 예산확보				내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중 ·녹색쌈지숲: 2013년 120개소, 2014년 163개소, 2015년 145개소 조성했고, 2016년 92개소 조성할 계획 ·산림공원: 2013년 37개소, 2014년 37개소, 2015년 28개소 조성했고, 2016년 26개소 조성할 계획 ·생활환경숲: 2013년 30개소, 2014년 58개소, 2015년 76개소 조성했고, 2016년 65개소 조성할 계획
	(5)-3.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 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 축을 복원 조성			○	·활동실적 없음
	(5)-4.도시공원 관련 법령 정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5조에 '도시농업공원' 신설했고 (2013.5.22.)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2015.1.20.)
(6)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6)-1.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개발사업정책실명제 운영 중
	(6)-2.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 되도록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	·국토기본법 개정 되는대로 하위법령과 지침 개정할 예정
	(6)-3.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했고(2015.12.1. 공

	에 관한 법률 개정				포)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중
(7) 토지이용 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7)-1.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2015.1.20.)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2016.1.21.)
	(7)-2.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 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토지이용 관련주민참여제도 도입)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2015.1.20.)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2016.1.21.)
	(7)-3.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 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이용 개발 관련 통합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추진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2015.1.20.)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규정
(8)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8)-1.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구축	○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4개 원전 공공기관 상시 관리,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도입을 반영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12.30.), 시행함(2015.7.1.)
	(8)-2.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 -노후 원전 연장운전 허가 엄격 제한,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			·2013년 11월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8)-3.국민여론 수렴 후 향후 20년간 전 원믹스 원점 재설정,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상 원전의 급격한 축소는 석탄 LNG 등의 국제연료가격에 변동위험에 직접노출가능성이 커 35년 기준 현재 41%에서



	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22~29%를 유지할 계획
	(8)-4.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재발방지 대책	○			·2013년 10월 10일 발표한 '원전비리 근절 후속조치' 반영해 법률 제정하고 원전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비리대책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결과 받아서 확인하고 있음
(9)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9)-1.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제작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 및 달성 전략 수립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14~2035)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35년 11%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개발과 보급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9)-2.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012년 7월 18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12~2016년) 발표하고 추진중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은 작년 13개 지자체를 선정했고, 지능형서비스 수요자원 120만KW확보는 2015년까지 244KW 확보함. 충전인프라 150,000기 보급은 아직 달성 못함. 제주실증단지 2013년 사업 완료함
	(9)-3.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개편(세제개편)	○			·13년 11월 21일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 등에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하고 개별소비세도 변경됨
	(9)-4.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	·자원배분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수급과 관련한 시장운영제 고치고 있음. ·전기사업법 개정(2014.5.20.) 제31조제5항: 발전소만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는데, 수요관리사업자가 같이 들어가서 전력수급관리체계를 개선했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2013.7.30.) 제3조제2항: 자

					가 소비용 직수입자의 저장시설 설치 부담 기준을 완화함.
(10)자원 에너지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10)-1.에너지 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0.29.)하고, 11월에 상임위 상정돼서 논의 중. (법령이 통과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제16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해당 내용임.
	(10)-2.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0.29.)하고, 11월에 상임위 상정돼서 논의 중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제21조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해당 내용임.
	(10)-3.매립부담금제도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0.29.)하고, 11월에 상임위 상정돼서 논의 중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제21조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해당 내용임.
	(10)-4.자원순환촉진법 제정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0.29.)하고, 11월에 상임위 상정돼서 논의 중
	(10)-5.재생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 통계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0.29.)하고, 11월에 상임위 상정돼서 논의 중
	(10)-6.폐기물자원화 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0.29.)하고, 11월에 상임위 상정돼서 논의 중
(11)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11)-1.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한-러 연계 수퍼그리드 규모는 현재 1000킬로미터(km)의 육상 HVDC. 러시아 극동지방의 풍부한 발전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것이 목적. 남북경협과 함께 추진할 예정인데 2012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p>진행 중. 이후 진척사항 없음.</p> <p>·한-중 연계 슈퍼그리드는 약 350km 의 해저 HVDC. 중국 산서성 등의 풍부한 석탄 자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성 검토 후 추진할 예정.</p> <p>·한-일 연계 슈퍼그리드는 약 230km의 해저 HVDC로, 2배 이상인 양국의 요금 차이를 활용한 전력수출 사업. 우선 민간차원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나서 추진할 예정. 이후 진척사항 없음.</p>
	(11)-2.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 북한 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지속 추진			○	·추진 사항 없음
	(11)-3.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하여 석유공급의 안정화 도모	○			<p>·2008년부터 건설한 오일허브(hub) 코리아여수(OKYC) 완공</p> <p>·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 중. 2017년까지 6,222억 원을 투입하여 북항에 99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 저장 터미널 건설.</p>
(12)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12)-1.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 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p>·2013년 에너지빈곤층 가스 요금 482억 감면(2012년 349억원보다 38% 증가)</p> <p>·가스공사는 2013년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정책제로 변경 시행. 사용량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정률식 감면제도에서 월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식으로 바뀌 혜택 대상자를 늘림. 다자녀 가구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p>
	(12)-2.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 배제,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
	(12)-3.기초생활수급	○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중.

	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60만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8만 1,000 원, 2인 가구 10만 2,000 원, 3인 가구 이상 11만 4,000 원을 지원. ·2015년 12월 9일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27만 5,060명. 전체 대상자의 45.8%에 불과.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서는 산자부의 홍보 부족과 지자체의 행정 의지 결여 등이 꼽힘.
	(12)-4.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	·논의 사항 없음 ·유가보조금 신청항목을 간소화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2014년 5월 행정예고.
	(12)-5.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	·논의 사항 없음
(13)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13)-1.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 공약 이행	○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기로 확정 및 UN제출(6월). ·애초 검토했던 감축 계획보다 목표 수준을 높임.
	(13)-2.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	·2010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출범해 운영 중
	(13)-3.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			·2013년 12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송도사무소 개소.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관련 전략 기술 교육·훈련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GGGI 본부와 녹색기후기금(GCF)를 연결하는 역할.
	(13)-4.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적 발			○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부담금 부과가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연기

	전적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월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12.11월) 제정. 지난 1월 12일 시행중.</li> <li>· 탄소 배출권거래제 2015년 1월 12일 시행. 하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시장에서는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li> <li>·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발표(2014.01.28.)</li> </ul>
(14)남북환경 공동체 구현	(14)-1.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 지식 기술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이 환경·민생·문화의 3가지 통로를 열어가자'고 제안.</li> <li>· 2015년 7월 28일 금강산 산림 병해충 실태조사를 위해 우리 측 산림 전문가 5명 등 총 8명이 29~31일 금강산을 방문(통일부). 하지만 지자체(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소나무 병충해 방제사업 정도임.</li> <li>· 남북공동 기후변화대응, 환경·에너지협력, 수자원관리 협력, 북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은 큰 진전이 없음.</li> </ul>
	(14)-2.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2015년 제2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국제기구·민간단체를 통한 산림·환경협력 지원을 결정.</li> <li>· 2010년 이후 중단된 남북 산림·환경 협력사업이 2015년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국내 민간단체가 16회 방북해 잣나무·낙엽송 종자 8t, 잣나무·미인송 묘목 27만주 등 양묘 자재 15억원 상당을 지원함.</li> <li>· 그러나 아직까지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남북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정부는 2016년에 산림·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환경) 등을 포함한 3대 민간통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li> </ul>
	(14)-3.oda사업을			○	· 실적 없음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지원				
	(14)-4.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4조치로 인해 이후 추가로 진행된 점은 없음.</li> <li>· 한전에서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단지 구축을 추진 중임. 우선 1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와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정도임.</li> <li>· 개성공단에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도 녹화사업부터 우선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압록강 등을 활용한 수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바꿔주는 정책으로 확대할 예정임.</li> </ul>
	(14)-5. 관련법령 개정			○	· 실적 없음
<b>합 계(58)</b>		<b>22</b>	<b>14</b>	<b>20</b>	<b>· 2(판단불가)</b>

**(1) 이행률 (완전이행 38%→미이행 34%→후퇴이행24%)**

- 지속가능한 국가 공약은 총 14개 공약영역에서 58개의 세부공약 중 완전이행은 22개, 후퇴이행은 14개, 미이행은 20개 공약임.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2개는 제외함.
- 이행률은 완전이행 38%, 후퇴이행은 24%, 미이행은 34%임. 2015년에 비해 완전이행은 31%에서 38%로 개선됐지만, 미이행은 41%에서 34%로 소폭 개선에 그쳤음

**(2) 평가**

- 지속가능국가 공약은 환경과 생태, 자원 및 에너지, 안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완전이행률이 38%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미이행률은 34%에 달함
- 물(상수도, 하천)과 공기(대기) 품질 개선, 유해물질 제거, 자연재해 방지 등의 공약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또한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약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토지이용 간소화와 안전한 원전 이용에 대한 공약은 모두 완전이행을 했지만, 토지이용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음. 또한 원전 재사용, 원전 유치 갈등, 방사능폐기장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도, 매립부담금제도입 등을 담은 자원순환촉진법은 2014년 11월 국회에 상정되기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음.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증액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못했음. 반면 2015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정책의지와 홍보 부족으로 전체 대상자의 45.8%만 혜택을 받고 있음
- 남북환경공동체와 관련된 공약은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19. 문화가 있는 삶

공약 영역	세부 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 문화재정 2% 달성	(1)-1. 국민 문화향후 기회 확대, 문화복지 확충, 콘텐츠이 보존 및 활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책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13~'17)상, 문화재정 2% 연도별 지출(안) : '14년 → 5.3조, '15년 → 5.7조, 16년 → 6.5조, '17년 → 7.8조
	(1)-2.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확대	○			·정부 재정 대비 문화재정 점유율 : 2012년 1.41%(4.6조) ->2015년 1.63%(6.1조) ->2016년 1.72%(6.6조)로 증액 중
(2)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2)-1.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기본법안 2013년 12월 10일 본회의 가결(12/30 공포)
	(2)-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민자치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3)-1.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			·2014년에 이어 2015년 5월 제2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
	(3)-2.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 강사 장애인 시설 파견 확대	○			·2015업무보고,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증원(230→292명), 프로그램 확대(450개→500개)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확대(103개소→110개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30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돕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308명으로 확대함.

	(3)-3.문화예술체육 시설에 장애인 특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			·2016년 예산. 장애인전문체육 지원(89억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79억원), 장애인실업팀 육성(13억원) 등의 사업에 지원될 예정.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이 2015년 11월 개관.
	(3)-4.공공문화예술 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			·2016년 예산. ▲장애인전문체육 지원(89억 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79억 원)
(4) 지방을 지역 특화된 문화 예술 도시로 개발	(4)-1.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			·'지역문화진흥법' 규정 2013년 12월 31일 의결. 2013년 7월의 '지역문화진흥법'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200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4년 말 정식으로 법안 제정
	(4)-2.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지원 강화 등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균형발전 도모		○		·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 추진함. ·'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은 '자체 기획전시 지원(전문 분야 전시, 주민 동아리 전시) 사업'과 '우수 전시 개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자체 기획전시 지원 사업'은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지역 시각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전시기획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전시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5년, 2016년은 진행하지 않음.
	(4)-3.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	·문예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13년 206억원 → '14년 248억원), '문화융성의 시대를 여는' 8대 정책과제 발표 ·2017년 문예진흥기금 고갈 우려. 정부가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의 운영 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내 작은 문화예술행사 등에는 지원 축소 가능성 우려.
	(4)-4.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사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시설·장비를 갖춘 버스로 소외지역



	업 강화			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2013년 8월부터 운영. '14년 43회 상영, 9,000명 관람 → '15년 300회 상영, 50,000명 관람 ·2016년 지역순회공연(180억 →350억), 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산업단지 등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263억 →303억)
	(4)-5.국 공립 사립 문화시설 공연 전시 프로그램 지방순회 지원 강화	○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사업 진행 중.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지역문화회관 등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2016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확대 계획 → 문체부 2015년 문화예술분야 성과발표
	(5)-1.예술인 복지법 개정, 사회보장 확대, 창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2013년 12월 10일 본회의 가결(12/30 공포)
(5)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강화	(5)-2.공연 영상분야 스태프 처우 개선		○	·스텝처우 개선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등 20인) 2014년 11월 18일 법안 발의. 상임위 접수상태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예술인복지법에서 해당항목 삭제된 채 제정됨(2011년) ·영화 제작분야('11.5월)와 방송제작('14.8월)의 스태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등 20인) 지난해 11월 18일 법안 발의. 상임위 접수상태. 아직 계류 중
	(5)-3.시 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 보장		○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예술인복지법에서 해당항목 삭제 의결(2011년) ·이후 진척사항 없음.
	(5)-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4.01.28.)
	(6)문화예술	(6)-1.순수 기초예	○	

창작 지원 및 문화 콘 텐츠 공정거 래 환경 조 성	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지원' 1인당 300만 원의 창작 준비금을 지원. 작년 3,500명 보다 500명 많은 최대 4,000 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 할 계획이며 예산규모도 지난해 105억에서 올해 120억 규모로 확대됨
	(6)-2.우수학술 교 양도서 선정 구입지 원확대 , 전자책 전 환 제작 강화	○			·2016년 우수도서(세종도서) 보급 142억 원 예산반영, 전자 출판산업 육성 25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 증액. ·전자출판 우수콘텐츠 제작지 원(10억100만원) 전년동일), 전자출판 산업경쟁력 강화기반 구축(2억9300만원), 전자출판 내수창출 및 해외진출 확대(9 억3800만원), 전자출판 표준 DRM 상용화(3억원)
	(6)-3.독립 예술 다 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			·2016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4억8,000만원, 영화전용관 운 영 지원 33억5,200만원 예산 편성(독립영화전용관 지역 확 대 예산 전년대비 4억3800만 원 증액)
	(6)-4.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 화	○			·2015년 말 인디밴드 및 뮤지 션 창작지원을 위한 음악창작 소 5개소 운영
	(6)-5.아동 청소년 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			·아동용 및 가족용 국산 애니 메이션을 중심으로 창작·유통· 홍보 지원 강화. ·2016년 애니메이션산업 창작 지원 152억 원, 캐릭터산업 98억 원, 만화산업 98억원을 예산에 반영.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에 전년 121억 원에서 152억 원 증액편성.
	(6)-6.5대글로벌(게 임, 음악, 캐릭터, 영화, 뮤지컬) 집중 육성	○			·2016년 게임산업 351억 원, 음악산업 82억 원, 캐릭터산업 98억 원, 영화산업 400억 원, 창작 뮤지컬육성 5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00억 원 증액 됨
	(6)-7.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 개 발 위한 R&D 기반 강화를 위 해 2016년 문화산업 기술개발 (R&D)에 전년대비 52억 원

					증가한 476억 원이 편성됨. 또한 CT기반조성(R&D) 74억 2000만원 편성됨
(7)문화 관광 시설 확충	(7)-1.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관 등 문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14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시행됨
	(7)-2.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		·2015년 2월 한국관광공사는 부산시, 대구시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역권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의료관광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함. ·2015년 11월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는 영남권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TF를 구성함. 2016년 의료관광 육성 49억 원의 예산 중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에 8,000만원을 예산이 배정됨
	(7)-3.문화콘텐츠 접목해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	·2013년 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방안 용역 완료이후 특별한 활동 없음.
(8)문화유산 관리체계강화	(8)-1.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	·2016년 문화재청 업무계획에 따라 3월 시행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네스코 기준에 맞추어 확대되는 무형문화재 범주(2→7개 분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재분류하고 지정기준을 정비하며, 형문화재위원회(3개 분과)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임. ·2015년 실시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번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재 분류·지정체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8)-2.국립지방박물관 신 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			○	·2016년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된 370억 원 반영.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의산박물관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한 신축, 증축 실적은 없음.

	(8)-3.시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강화		○	<p>·문화재청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6개월간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를 지난해 8월 발표한바 있음.</p> <p>·시·도지정문화재 5305건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E등급(1,043개)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F등급(67개) 중 E등급은 30%수준, F등급은 20%수준만 보수정비가 완료됨</p>
	(8)-4.문화재 환수 활동 강화		○	<p>·문화재청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올 한해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 공감 확산'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함. 6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일본·중국 소재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외 소재 문화재 심층조사를 3~12월 실시할 예정임.</p>
	(8)-5.문화유산 디지털DB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	<p>·2015년 7월 '국가문화유산 통합DB 구축 설명회'를 갖고 전국 국공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문화유산의 온라인 통합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급할 계획임.</p> <p>·향후 사립·대학박물관, 개인 및 연구소까지 확대해 1000만 점 이상의 DB를 구축할 예정임. 2016년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DB구축에 작년과 똑같은 8억3400만원 예산배정</p>
	(8)-6.문화재보호기금 확충	○		<p>·2013년 1082억, 2014년 1029억, 2015년 1053억, 2016년 1224억, 2017년 1,418억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시행 중</p>
(9)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9)-1.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 은퇴선수 고용 지원		○	<p>·2013년 9개소 시범운영을 시작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2016년 59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2017년 229개소를 설치할 예정임.</p> <p>·은퇴선수 법인 등 지도자 단체를 지원해 체육 선순환 기틀을 마련예정</p>
	(9)-2.국가대표선수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		○	<p>·2013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경기지도자</p>

	급 자격 부여				2급, 생활체육지도자2급) 취득요건 완화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대표선수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9)-3.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		·태릉선수촌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충북 진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나, 문화재청과 대한체육회, 서울시가 태릉선수촌 문화재 등록에 따른 철거와 보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9)-4. 스포츠산업 융 복합 클러스터 조성		○		·문체부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방안으로 국고지원 1229억 원과 민간투자 3173억 원을 들여 2019년까지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를 완공할 계획임을 밝힘. ·문체부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스포츠와 ICT분야에 특화된 스포츠융복합 사업 개발지원,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및 일자리 발굴지원, 융자상담, 지자체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조성 등 33억5000만원 예산의 민간 공모사업을 진행 중임
	(9)-5. 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		·국회는 2014년 본예산 심의에서 10개월 계약을 11개월 계약으로 늘리는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정부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오히려 처우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 2016년 문체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28억 원만 배정
(10)남북문화 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10)-1. 남북 예술작품 교류전시 및 남북 예술가 공동창작 활동 지원			○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 회의가 2015년 회의를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2016년부터 교류전시 회의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보류상태임 ·남북예술가 공동창작활동 지원은 2014년부터 통일문화교육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통일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탈북민 예술가들과 남한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동창작활동이라고 보긴 어려움
	(10)-2.북한 문화유산 복원 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디지털데이터베이스 구축			○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 회의에서 북한 문화유산 복원 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디지털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2015년 마지막 회의 이후 2016년부터 교류전시 회의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보류상태임
	(10)-3.민족대통합 남북 스포츠 교류 확대,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			○	·역사·문화재를 통한 한민족 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 민족 기록유산 공동 전시’ 및 남북한 축구대회, 태권도 등 스포츠 교류 추진 중 ·말레이시아 IOC 총회 WTF-ITF 총재 협의(‘15.7월) 및 대한축구협회 명의 전통문복측 송부(‘15.8월)
	(10)-4.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ODA 중점협력국 초청 연수, 저개발국 ‘글로벌 관광 컨설팅’, ‘관광ODA 컨설팅’ 과제 등 진행하고 있음 ·문화예술 ODA 예산 105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유네스코 세종문화재단 지원 예산은 2015년 115백만 원에서 2016년 122백만 원으로 7백만 원 증가했고, 문화동반자 사업은 2015년 1,170백만 원에서 2016년 1,145백만 원으로 25백만 원 감소함. WIPO 저작권 신탁기금 지원은 2015년 529백만 원에서 2016년 550백만 원으로 21백만 원 증가함 ·전체 ODA 예산에서 문화 부문은 2014년 0.5%, 2015년은 0.54%에 불과
(11)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	(11)-1.관광진흥법 체계정비				·모호, 판단 불능
	(11)-2.여행마우처 지원 대폭 확대			○	·2015년 242만 명 기초·차상위 대상자 중 76%인 185만 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개인당 5만원)함. ·2015년 531억 원에서 2016년 553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
	(11)-3.고령자 장애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

	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 환경 인프라 확충, 배리어 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관광도우미 양성				사는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 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장애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2015년도 열린 관광지' 6개 선정함(순천만자연생태공원, 경주보문관광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중구근대골목,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통영케이블카 등)
	(11)-4.초중고 대상 토요일 체험여행 지원 확대 및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		·2012년부터 토요일문화학교(초중고 및 동반가족 대상) 추진 중 ·주말여행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이고, 운영 예산 2015년과 동일하게 20,687백만 원 책정 됨
	(11)-5.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투어컨덕터 등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		·카지노 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 추진 중이고, 고급 관광객 겨냥한 프리미엄급 통역안내사 양성(영어·중국어 등 어권별 양성, 연간 100명)함. ·관광인력 포털사이트는 2016년 2월 오픈할 예정이고, 포털사이트 통해 구인·구직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인력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 관광분야 경력인증제 도입 추진할 계획
	(11)-6.지역유희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 폐광지역 리모델링, 슬로시티 관광브랜드 가치제고,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육성 등 기존 관광자원 적극 개발		○		·폐광지역 리모델링은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관광상품 개발하며 2015년부터 추진 중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예산 3,200백만원에서 13,923백만원으로 10,723백만원 증액함
	(11)-7.자전거 관광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등 저탄소 관광레저활동 증진			○	·2015년에 자전거 여행길 30선 선정해서 웹사이트 구축 외에 특별한 성과 없음
(12)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12)-1.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		·중국 단체관광품질위원회('15년 10월 출범)와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체저가관광상품 품질 관리를 강화 ·관광경찰의 현장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 유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12)-2.다국어 관광 안내표지 확충,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 2,996 → 2,671백만원 (325백만원 감)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24억 원)
	(12)-3.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		○		·2015년 1월부터 호텔업 등급제가 도입됨 ·과거에는 사전에 평가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평가'만 이뤄졌지만 새로운 등급 기준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와 더불어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암행평가(4~5성급)', '불시평가(1~3성급)' 등 2단계로 구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 올해까지 연장
	(12)-4.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의료관광 공연 관광 등 고부가 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및 k-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		○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를 도입,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국제회의 관련시설 집적화를 통한 국제회의산업 국제경쟁력 강화개정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16년 한류진흥 예산 : 5,473 → 6,575백만원 (1,102백만원 증) ·한류콘텐츠 지원 : 애니메이션 산업 152억원, 음악산업 82억원, 캐릭터산업 98억원, 만화산업 98억원, 게임산업 351억원
	(12)-5.GCF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		○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2015년 233억 원에서 2016년 4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됨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도 전년대비 9억1,000만원 줄어든 8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됨
(13)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13)-1.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모호, 판단 불능
	(13)-2.해외여행객에 대한 재난재해,		○		·외교부내 재외국민안전과 신설



	납치 등(개인여행보 험제외부분) 국민여 행 보호 및 안전체 계 확립				·영사콜센터. 2015년 ‘6개 국 어 통역상담 서비스’를 도입하 고, 10월부터는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서비스의 영역을 지속 확대 중.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해외 대형 재난 발생 우리국민을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대피시키 기 위한 ‘전세기 임차 예산’ 13억 과 치안이 현저히 취약 한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 보호방안에 대해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는 ‘치안 컨 설팅 사업’ 예산(1.5억)을 신규 편성
	(13)-3.주요 관광목 적지 안전여행정보 세분화 및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 지( <a href="http://www.0404.go.kr">http://www.0404.go.kr</a> ) 구 축
	(13)-4.중소 관광기 업 육성정책 추진, 2만여개 관광사업 체 대상 기업고도화 (기업it인프라, 법인 화 등) 및 전문화 (업종별, 시장별) 유 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			·총 22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 육성펀드를 조성. 에스케이투 자파트너스는 30일 약정 총액 220억 규모의 '에스 케이-창조 관광밸류업벤처조합(이하, 창조 관광펀드)' 결성총회를 열고 조 합 결성을 마무리. 첫 창조관 광펀드는 정부가 간접투자하는 모태펀드 130억원(59.09%)과 산업은행 30억원(13.64%) 등 으로 구성(2015.09.20.) ·215년 12월 글로벌텍스프리 (주), 창조관광펀드 1호 투자기 업으로 선정
<b>합 계(58)</b>		<b>24</b>	<b>24</b>	<b>8</b>	<b>· 2(판단불가)</b>

**(1) 이행률 (완전이행· 후퇴이행 41%→미이행 14%)**

- ‘문화가 있는 삶’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세부공약 58개 중 판단이 불가한 2개를 제외하고 24개가 완전이행 되어 완전이행률은 41%, 후퇴이행 되거나 이행 중인 공약도 24개로 41%의 이행률을 나타냄. 미이행 공약은 8개, 1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관련 공약의 미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근본적 체질 개선보다는 재정 지원 확대 등 외형적 변화에 기인함

**(2) 평가**

- 문화·예술관련 공약의 내용이 재정확충, 기반조성, 권리보장, 지원확대, 사업강화 등 외연 확대 내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스포츠 관련 공약은 문화기업 설립, 은퇴선수 고용지원, 국가대표선수 우대, 융복합 클러

스터 조성, 태능선수촌 기능유지 등은 후퇴하거나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은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더욱 처우가 나쁜 상황이 됨

- 관광 관련 공약 역시 지원확대,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관광자원 적극 개발, 관광레저활동 증진, 저가 관광 개선 등 일부분의 제도변화와 재정지원 확대로 인해 완전이행과 후퇴이행(이행 중 포함)률이 높게 나타남.

## 20. 정보통신

공약 영역	세부공약	이행		미이행	비고
		완전이행	후퇴이행		
(1)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1)-1.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차별없는 인터넷 공간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1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요금제 등에서 mVoIP 제한</li> <li>2013.10.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li> <li>미래부, 단말중립성 성과로 2014. 01. 발표한 ‘스마트폰 앱 선택재 가이드라인’을 사례로 들고 있음. 하지만 해당 내용은 단말 중립성 내용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고 실제 가이드라인대로 개선되지 않음.</li> </ul>
	(1)-2.네트워크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12.기준</li> <li>11,280개 공공와이파이 설치(목표치 97.7% 달성)</li> <li>하지만 전국 기가인터넷 커버리지가 60%에 그치고</li> </ul>

					있고,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은 달성하지 못함
	(1)-3. 다양한 공인인증 서비스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06.13.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li> <li>▪ 하지만 차세대 전자인증 기술을 활성화하지 못했고, 도리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생체정보 활용 인증 기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논란을 야기</li> </ul>
(2)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1. 엔젤투자 매칭펀드 확대,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720억 원 조성. 올해 500억 추가 예정</li> </ul>
	(2)-2.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11개 지정</li> </ul>
	(2)-3.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 확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li> </ul>
	(2)-4.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06. 거래소가 아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설립한 이후 진척된 바 없음</li> </ul>
(3) 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의 창조	(3)-1.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기준 5개 설립. 올해 2개 지정 예정</li> <li>▪ 2017년까지 11개 목표</li> </ul>
	(3)-2.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02. 창조자 산마당(컬처링)을 운영 중이나 실질적인 거래소 역할도 하지 않으며 콘텐츠 역시 역사콘텐츠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되어 있음.</li> <li>콘텐츠코리아 랩이 인큐베이팅 시스템 역할</li> </ul>
	(3)-3.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12. 기준 창의인재 844명 배출</li> <li>2016. 180명, 2017. 220명 선발 교육 예정</li> </ul>
	(3)-4.‘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6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으로 시작해 14년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네이밍 변경</li> <li>2014년 12월 말 기준, 1081개 기업 및 프로젝트에 1조 3545억 원 투자됨.(2015년 2월 기준 결성액 1조 580억 원 운용중)</li> </ul>
(4)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4)-1.창조경제 전담 조직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창조과학부 신설</li> </ul>
(5)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5)-1.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판단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05.02. 「방송법」 국회 통과</li> </ul>
	(5)-2.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향방송법(「방송법」) 국회 계류 중</li> </ul>
	(5)-3.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05. 스마트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스마트 엑스 캠프 운영중</li> </ul>
	(5)-4.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향방송법(「방송법」) 국회 계류 중</li> </ul>
	(5)-5.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향방송법(「방송법」) 국회 계류 중</li> </ul>
	(5)-6.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통신관련 법령 등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향방송법(「방송법」) 국회 계류 중</li> </ul>

(6)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6)-1.통신심의 대폭 축소, 임시조치 제도 개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li> </ul>
	(6)-2.인터넷 피해구제 제도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10. 방심위 인터넷 피해구제 센터가 개설된 바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li> </ul>
	(6)-3.명예훼손분쟁조정 위원회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li> </ul>
	(6)-4.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 구축, 공적규제와 자유규제의 유기적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심의협력시스템’ 구축 - 총 26개 사업자(국내 23개, 해외 3개)</li> <li>2015년 한해 14만 8,751건 시정 조치</li> </ul>
(7)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7)-1.통신비 부담 대폭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통3사 가입비 폐지했지만 여전히 기본료 폐지 등을 위한 논의에는 적극적이지 않음</li> <li>하지만 모든 요금제가 아닌 mVoIP의 허용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차별적 도입</li> <li>2015.12. 선불요금제 이용자 3,102,518명</li> </ul>
	(7)-2.요금인가 심의과정 투명하게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li> </ul>
	(7)-3.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통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li> </ul>
	(7)-4.스마트폰 가격인하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2014.10. 시행한 단통법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인하를 유도했다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여전히 전략폰 등의 출고가는 고공행진 중임</li> <li>▪ 공시지원금, 자급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미흡함</li> </ul>
	(7)-5.스마트폰 과도한 차별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10. 단통법 시행하였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요금제에 따른 합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li> <li>▪ 과도한 지원금 지급은 보다 음성화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li> </ul>
<b>합 계(27)</b>		<b>10</b>	<b>9</b>	<b>7</b>	<b>*판단불능 1</b>

※ “(5)-1.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공약 판단불가

**(1) 이행률 (완전이행 37%→후퇴이행 33%→미이행 26%)**

- 정보통신분야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7중 10개만 이행되어 37%의 이행률을 보임. 후퇴이행, 미이행 된 공약 역시 각각 33%, 26%에 달함.
-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영역이 완전이행 공약이 각각 1개 밖에 되지 않아 세부공약별 이행률이 낮음.

**(2) 평가**

- 정보통신분야 공약이행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 작년과 마찬가지로 완전이행이라 평가되는 공약은 대부분 편당 확대 및 플랫폼 설립 등 기초적인 수준임.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이 공약의 주요 목적인 “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의 창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
- 특히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도리어 「신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인터넷 매체를 통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역행하고 있음.
- “가계통신비 경감”의 경우 「단통법」 제정 및 시행을 주된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요금 인가 관련 정보와 적정성 평가자료 등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